

전국재해대책협의회  
2000 연보



**전국재해대책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Disaster Relief









## “새 천년의 재해 이재민구호” 재해대책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천년의 끝은 온갖 기상이변에 따른 지진과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8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퍼부은 집중호우와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태풍 제17호(엔)와 제18호(바트)의 상륙으로 모두 89명이 사망하고 7천여세대 2만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무려 1조2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적인 지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재해대책협의회도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개월동안 전국 언론기관을 통해 수재의연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모아진 의연금 520여억원, 물품 300여만점(환가액 270억원 상당-11톤 차량 560여대 분량)은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위로금 및 생계비 등으로 긴급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에는 강원도 영동지방 등에 난 산불로 8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3,448ha의 산림을 태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본 협의회는 곧바로 재해의 연금품 모집을 실시하여 산불지역 이재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은 국민의 따뜻한 은정이 배어있는 재해의연금품은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에게 동포애를 전해주어 희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이 빠르게 재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재와 금년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재민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6월 일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최학래



## 차 례

●	인 사 말 .....	3
●	본 협의회 역대회장 .....	5
●	화 보 집 .....	6

### I. 총 설

1.	재해대책협회의 설립정신 및 목적 .....	14
2.	재해대책협회의 발자취 .....	15
3.	재해대책협회의 조직과 운영관리 .....	17

### II. 초점

1.	IMF사태와 수재의연금(초점-1) .....	18
	(1) 재해모금사상 최고액 기록 .....	18
	(2) 관심 끄는 ARS모금 .....	20
2.	재해구호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초점-2) .....	22
	(1) 재해구호활동의 문제점(박혜선) .....	20
	(2) 재해구호체계 개선 방안(전국재해대책협의회) .....	26
3.	재해와 보험(초점-3) .....	29
	1)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고찰(김양수) .....	29

### III. 구호실적(재협 구호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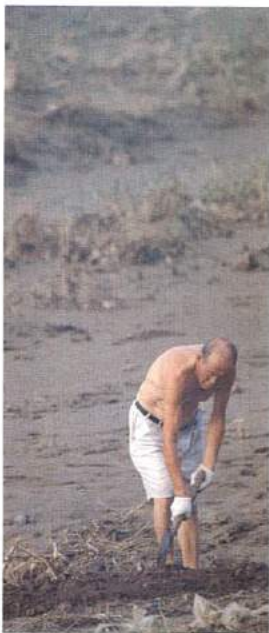
1.	1999년도 모금 및 구호실적 .....	36
	(1) 1999년도 재해발생 원인과 피해상황 .....	36
	(2) 1999년도 수재의연금품 모집 실적 .....	38
	(3) 1999년도 이재민 구호 실적 .....	40
2.	2000년도 산불피해 현황 .....	43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재협 활동계획)

1.	2000년도 재해모금 계획 .....	46
2.	2000년도 재해의연금 지원기준 .....	49
3.	의연금 관리 및 운용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96호) .....	50
4.	2000년도 재해구호지침(보건복지부 지침) .....	52

### V. 부록

1.	통계자료 .....	66
2.	홍보 및 보도자료 .....	76
3.	미담 사례 .....	78
4.	회원 명단 .....	80







# 본 협의회 역대회장

초대회장



俞鎮午  
(전)고려대학교 총장

3대회장



李寬求  
한국신문  
편집인협회 초대회장

4대회장



林炳稷  
초대 외무부장관

5대회장



高在旭  
(전)동아일보사 회장

창립 및 6대회장



柳達永  
서울대 명예교수

7대회장



柳建浩  
(전)조선일보사  
주필 및 대표이사

8대회장



崔鐘律  
(전)경향신문사 사장

9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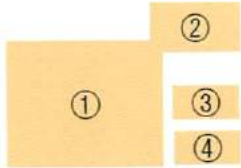
方相勳  
조선일보사 사장



# 1999년도 수해현장과 구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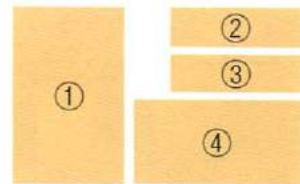


- ① 7월 30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문산시내가 물바다로 변한 처참한 모습
- ② 최학래회장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0년 재해를 대비하여 모금과 이재민 구호 및 대규모 창고 건립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 ③ 최학래회장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구성 및 창고 건립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④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은 김대중대통령 및 비서실 직원이 모금한 강원도 산불이재민돕기 성금을 본회 최학래회장에게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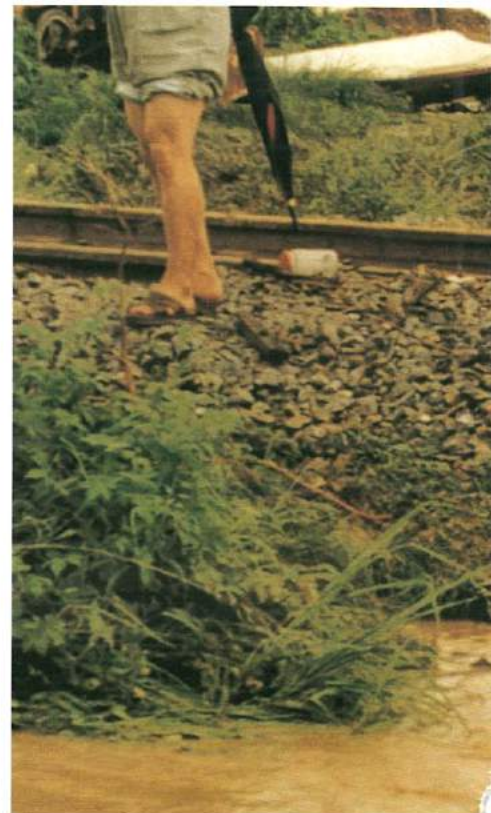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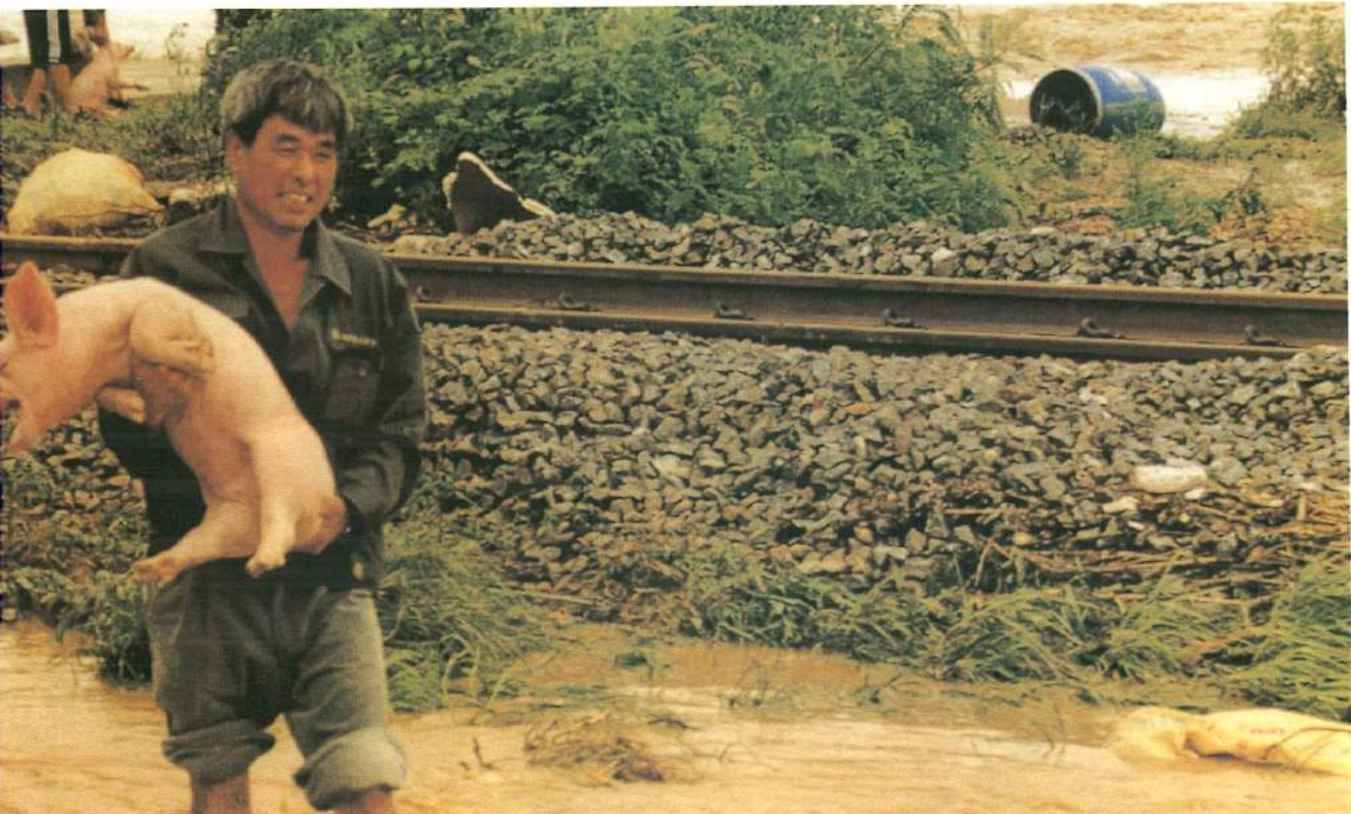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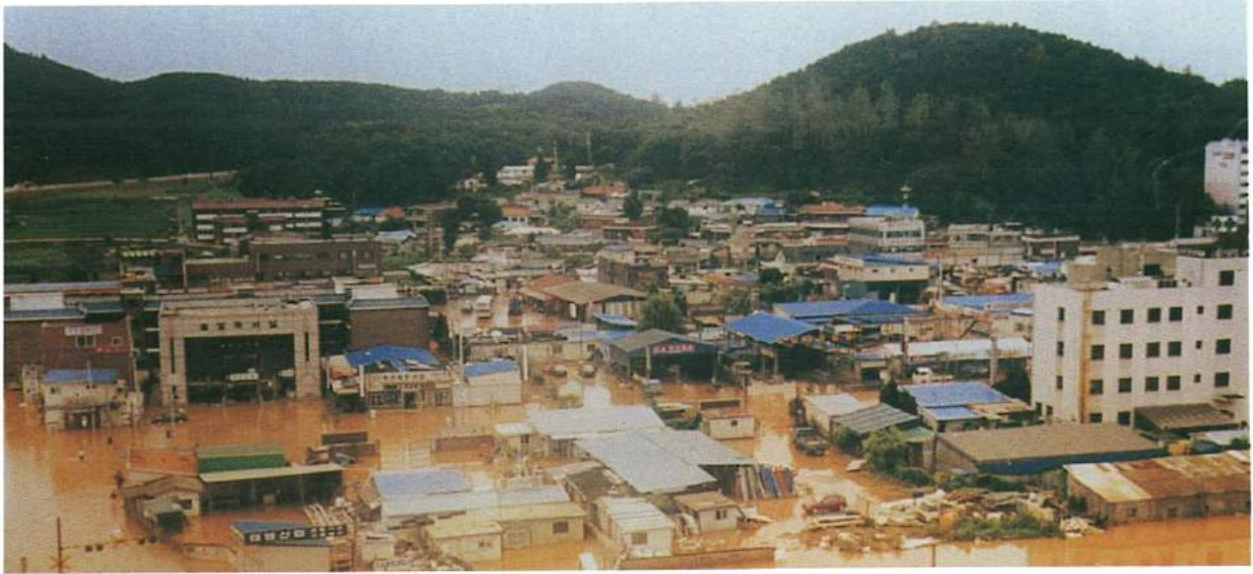
# 수해현장



- ① 집중호우로 유실된 다리위에서 농경지를 잃은 농부가 시름에 잠겨있는 모습
- ② ③ 집중호우로 도심이 물에 잠겨버린 전경 (②연천읍/ ③파주시)
- ④ 서울-문산간 철도가 유실되고 부근 측사에 고립된 가축을 구하고 있는 모습









# 인명구조와 복구

①

②

③

①②③ 수해가 발생하자 <민·관·군>이 일체가 되어 인명을 구조하고 이재민을 구호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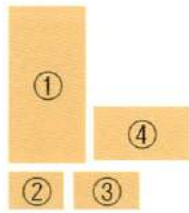
- ①
- ②
- ③

◇수해로 가옥이 파손되자(②) 임시주거시설(③:콘테이너 주택)을 설치하였으며 국민성금이 포함된 지원금 등으로 건립된주택(①)





# 의연품 전달과



- ①②③ 국민의 정성어린 물품을 재해지역에 긴급히 전달하는 모습
- ④ 이재민이 수용시설에 거거하는 모습(본 협의회는 수용 이재민의 재기를 위해 포포 및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였다)





# 이재민 구호

⑤

⑤ 국민 정성어린 의연물품을 이재민에게 지급, 동포애를 전달하였다.

⑥

⑥⑦⑧ 이재민구호를 위해 식수제공, 의료구호, 방역활동에 진력하는 모습

⑦

⑧





## 1. 재해대책협의회 설립정신과 목적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재협)의 창립정신은 민족전래(民族傳來)의 환난상조(患難相助)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재민구휼(災民救恤)에 있으며, 재협의 설립목적은 독립된 하나의 민간상설기구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책임을 분담,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구휼하는 데 있다.

재협 설립의 직접적인 동기는 1961년 7월에 발생한 수재민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전국의 신문사가 중심이 되어 「전국수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체계적인 구호를 전개한 데서 비롯되었으나 그 바탕은 민족전래의 환난구휼의 전통적인 관행이 촉진제가 되었다.

그러나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거족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 (1) 설립 취지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동포들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그 예방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내 동족이 겪는 재난을 정부의 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포끼리 서로 돕고 동포애 발양으로 불의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복구의 발판이 되어 주고자 재해구호를 위한 상설기관으로 본 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재해모금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구호사업을 전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2) 설립 목적

불시로 발생하는 재해의 복구와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국민의연금품의 모집과 관리 및 배분을 통하여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동포애를 바탕으로 복지사회(福祉社會)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다.







## 2. 재해대책협의회 발자취

### (1) 재협 창립

재협은 5.16군사혁명 직후인 1961년 7월 13일에 발족,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한 지속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간재해모금 구호」단체인 재협이 발족하기 전에는 각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모금하고 각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구호기준에 따라 이재민들을 구호한 탓으로 구호의 획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구호사업의 일원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욕구를 언론기관이 주도하여 탄생시킨 것이 바로 재해대책협의회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모금운동은 고려 때부터 찾아볼 수 있으나 순수한 「민간모금운동」은 주권을 빼앗긴 일제시대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구호하자」는 구호 아래 모금운동을 전개한 민간 신문사 주도의 「이재민모금사업」이 「구호금품모집」의 효시라 하겠다.(1920년 동아일보, 1923년 조선일보사에서 이재민 모금운동 전개)

1920년대부터 40년간 이어온 민간신문사 주도의 「이재민 의연금품 모집운동」은 8.15해방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전국의 신문사로 변했으며 1961년 7월에 발생한 삼남(三南)지방의 수해와 경북 영주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때는 전국의 모든 언론기관이 수재민돕기 의연금품 모집에 참여하는 협동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각 언론사에서 모집한 구호금품은 각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구호기준에 따라 집행했기 때문에 「중복 구호」 「형식 구호」 「누락 구호」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구호의 난맥상이 표출되어 「구호창구의 일원화」가 절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듯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에 공감한 언론기관 (「한국신문편집인협회(편집)」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한국신문협회 전신」이 선봉이 되어 「군사정부」를 설득, 「구호사업의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제계와 종교계, 학계와 사회사업계 등 각계 대표 30여명과 함께 1961년 7월 13일 전국수해대책위원회(재협 전신)를 발족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시 기구로 발족된 전국수해대책위원회는 출범 2개월 후인 1961년 7월 15일 자동 해산되고 1961년 10월 26일 전국재해대책위원회라는 상설기구로 다시 설립된 재협은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편되고 1968년 사단법인으로 발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재협 연혁

1961년 7월 13일에 발족한 재협은 2000년 7월 13일이 되면 40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40년동안의 변천과정을 단계별로 살펴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61년 7월 13일 「전국수해대책위원회」로 발족, 수임사항을 완수하고 출범 2개월 후인 1961년 9월 15일, 자동 해산되기까지의 2개월동안의 한시기구시대를 『재협의 제1단계 시대』라 하겠으며,

제2단계는 1961년 10월 26일, 상설기구로 새로 발족된 「전국재해대책위원회」의 출범에서 사회단체로 등록되기까지의 3년간(1961. 9. 21 ~ 1964. 9. 2)의 임의 단체시기를 『재협의 제2단계 시대』라 할 수 있다.

제3단계는 1964년 9월 3일, 사회단체로 등록(보건사회부 등록), 민간 구호사업에 관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민간구호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4년간(1964. 9. 3 ~ 1968. 10. 14)을 『재협의 제3단계 시대』라 하겠으며,

제4단계는 1968년 10월 15일 사단법인으로 개편,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독립된 이재민 <민간모금-구호>단체로 정착, 오늘에 이르는 법인시기를 『재협의 제4단계 시대』라 하겠다. 재협 40년의 약사(略史)는 다음과 같다.



재협 40년 약사(略史)

연도	구분	내역	비고
1961. 7.13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5.16 1개월 후
1961. 9. 15		전국수해대책위원회 해체	자동 해산
1961. 9. 26	(가칭)전국재해대책위원회 창립 준비위원회 조직		상설기구 준비
1961. 10. 26		전국재해대책위원회 창립총회	절차 완료
1961. 11. 7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상설기구
1964. 9. 3		사회단체 등록	보건사회부 등록
1964. 10. 31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명칭 개칭
1968. 10. 15		사단법인으로 개편	서울지방법원 등록





### 3. 재해대책협의회 조직과 운영관리

재협은 언론기관과 언론사를 주축으로 경제계, 종교계, 사회사업계, 여성계 등 각계 대표 35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협의체로 조직되었으며 이들 대표의 의사에 따라 조직이 운영 관리되고 있다.(재협 회원명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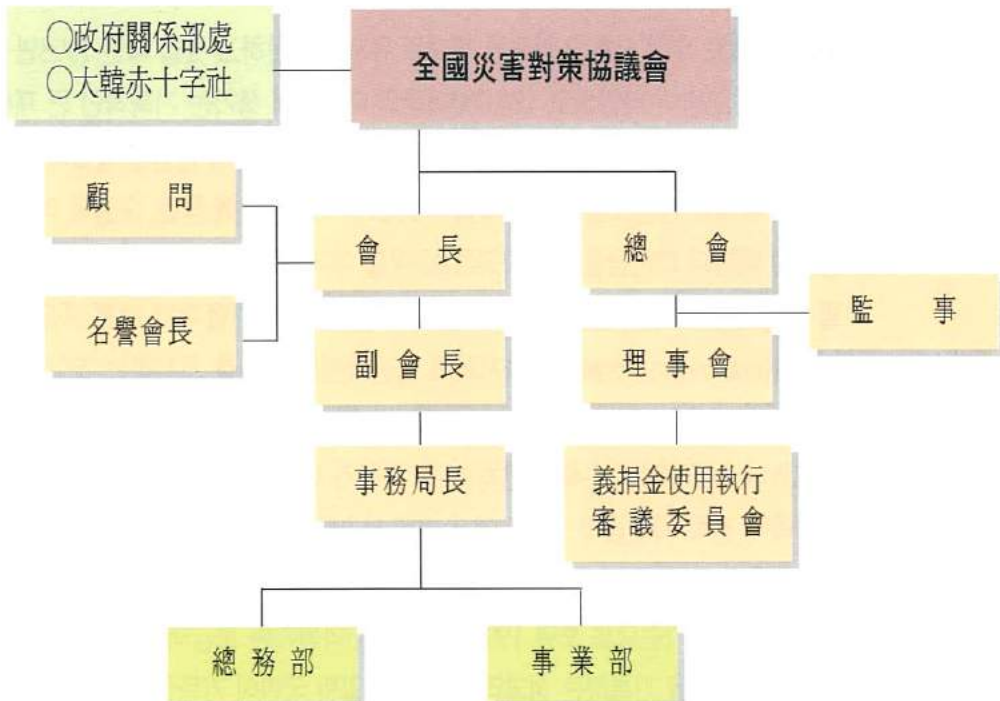
재협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그리고 「감사기관」으로 3분화되어 있으며, 의결기관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로 구분하는 이원의결제(二元議決制)를 도입하고 있다.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집행하며 집행사항은 감사가 감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재협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

#### 사업내용

- 1. 재해복구 및 구호를 위한 국민의연금품 모집사업
- 2. 전호사업에 대한 기획, 통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3. 재해이주민 구호사업
- 4.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재해대책협의회 기구표 ●





## II. 초 점

### 1. IMF사태와 수재의연금(초점-1)

#### ■ 1998 ~ 1999년도의 모금과 구호의 특징

IMF사태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386명이 사망하고 184,0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의 큰 재해가 발생하자 수해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수해이재민돕기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모금운동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민심동향」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런데 전국의 신문·방송사가 앞장서서 캠페인을 벌인 모금운동은 재해모금사상 연도별 모금액이 최고액이라는 기록을 남겨 눈길을 끌게 했으며 「나라가 재난을 당하면 더욱 협동심을 발휘한다」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어 관심을 모았다.

#### (1) 재해모금 사상 최고액 기록

#### ■ 나라가 재난을 당하자 더욱 협동심을 발휘한 우리 국민의 협동심

IMF사태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 1998년 7월, 집중호우가 발생, 386명이 사망하고 184,000여명의 이재민이 생기는 기록적인 큰 재해가 발생하자 683억원이라는 재해모금사상 최고액의 의연금이 접수되어 관심을 끌었다.

국내 유일의 민간모금단체인 재협이 1961년 7월 13일에 창립,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의연금을 모금하고(30회) 이를 이재민구호에 사용했는데 모금 실적을 기탁자별 구성비율(기탁금액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기업체가 전체 의연금의 반이 넘는 54.8%(1990~1996기준 연평균)를 차지하고 일반국민이 27%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었다.

그러나 IMF사태에 수해가 겹치는 큰 재해가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일반 국민의 의연금 기탁액이 전체 의연금의 27.1%에서 40%선으로 경총 댄 반면 기업체의 경우는 54%에서 40%선으로 푹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눈길을 끌게 했다.

모금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98년도의 683억원이란 모금액은 재협창립 이후 30회의 모금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는 성과라 하겠는데 일반 국민이 기탁한 의연금을 보면 기업체에서







기탁한 의연금 280억원(구성비 41.1%)보다 많은 288억 5천만원(구성비 42.2%)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으며, 1999년도의 경우도 98년도와 비슷한 일반국민 40%(208억원), 기업체 43.7%(227억원)라는 현상을 보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IMF사태 이전의 일반국민 27.1%, 기업체 54.8%라는 경향이 IMF 이후에는 일반국민 41%, 기업체 42%라는 새로운 흐름이 2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에 속한다 하겠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98년의 41.1%에서 99년 43.7%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한국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 되며, 일반국민의 경우 IMF사태 이전의 27%에서 IMF사태 후 40%선으로 경총 뛰는 현상을 보인 점은 우리 국민의 바탕에 깔린 협동정신이 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어 음미할만한 점이라 하겠다.

■ IMF모금현황 분석

년도	합 계	공무원모금	학생모금	기업체모금	일반모금
1990년	41,466,700,890	5,133,861,494	1,890,922,195	24,672,206,854	9,769,710,347
		12.4%	4.6%	59.5%	23.5%
1991년	25,556,667,362	2,130,824,540	2,258,723,963	13,449,516,453	7,717,602,406
		8.3%	8.8%	52.7%	30.2%
1994년	23,030,683,020	4,293,947,000	350,270,000	13,964,168,000	4,422,298,020
		18.6%	1.6%	60.6%	19.2%
1995년	16,421,556,009	1,630,471,939	1,375,493,554	8,273,700,185	5,141,890,331
		9.9%	8.4%	50.4%	31.3%
1996년	39,475,723,775	3,956,622,918	3,121,078,212	19,970,622,987	12,427,399,658
		10.0%	7.9%	50.6%	31.5%
1998년	68,300,018,121	5,384,901,846	6,006,770,886	28,056,855,324	28,851,490,065
		7.9%	8.8%	41.1%	42.2%
1999년	52,006,462,184	5,126,898,514	3,375,735,170	22,717,356,204	20,786,472,296
		9.9%	6.4%	43.7%	40.0%
평 균	38,036,830,194	3,951,075,464	2,625,570,569	18,729,203,715	12,730,980,446
		10.4%	6.9%	49.2%	33.5%





### (2) 관심 끄는 ARS모금

#### ① ARS모금의 도입

IMF사태 이후 재해의연금도 ARS로 모금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재협 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재해의연금은 신문사나 방송사 등에 기탁되는 직접 모금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8년부터 「ARS모금」방법이 보편화되면서 의연금의 10%를 차지하는 성과를 기록,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ARS모금 방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의연금 기탁자가 신문사나 방송사를 찾아가 의연금을 접수시키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ARS모금 방법이 채택되면서 「집에서 전화로 의연금을 접수」시키는 편리함이 생겨 ARS모금의 인기가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ARS모금은 1998년에 87억원, 99년 59억원 등 실시 2년만에 146억원이라는 모금 실적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책이 촉구되고 있다.

#### ② ARS모금의 현황과 대책

1996년 서울방송에서 1996년 7월 26일 ~ 28일 기간 중 중부지방 호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ARS모금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이것이 ARS모금의 효시라 하겠다.

1998년 전국적인 호우피해 당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중앙 방송 3사(KBS, MBC, SBS) 및 부산 방송, 인천방송 등에서 실시하여 새로운 모금방안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 2000년 산불이 재민을 돕기 위한 ARS모금부터 개별 방송사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본회 주관 아래 공동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ARS모금의 현황

ARS모금은 1일 1통화당 일정액이 부과되고 이 금액은 다음 달의 전화요금 청구서에 부과되어 청구되며, 징수된 ARS모금은 한국통신의 분류에 따라 본 협의회로 전달되고 있다.

수재의연금의 경우 ARS모금에 따르는 제반 소요 경비는 현재 한국통신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 ARS시스템의 개선방안

현재 ARS모금을 통한 성금이 본 협의회에 전달되기까지는 보통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전화요금 청구기간 1개월, 한국통신 분류기간 1개월) 전화요금 연체 등의 이유로 인하여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한국통신에서 700서비스(6,600여종)를 분야별로 분류하는 과정이 1개월 정도 소요됨).

따라서 본 협의회에서는 ARS모금 실제금액(전체 물수의 80%)을 예상해서 본 협의회가 중소기업 규모 재해이주민 구호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ARS성금 입금 시 정산하고 있다.

재협은 ARS모금이 정착됨에 따라 첫째 현재 전화 한 통화당 일률적으로 1,000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기탁자가 원하는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ARS이용시 통화당 45원의 전화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ARS전화통화료 45원(1통화당)을 한국통신에서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ARS 모금액>

(단위 : 천원)

	KBS	MBC	SBS	부산방송	인천방송	기타	계
1996년			511,313				511,313
1997년	3,366,357	2,671,742	2,480,738	145,075	55,511	1,078	8,720,501
1999년	3,211,343	1,692,497	879,737	44,376	79,879	13,930	5,923,761





## II. 초 점

### 2. 재해구호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초점-2)

#### (1) 재해구호활동의 문제점(경기도의 재해구호)



박 혜 선 사무관  
경기도 사회복지과

##### 가. 처음말

재해의 정의와 유형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대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해(disaster)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재해의 전통적 개념은 주로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재해의 현황과 특성을 보면 재해의 파급이 자연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방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해와 재난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발생의 파급영향요인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장래의 모든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활동으로써 정치·정책지향적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인적, 물질자원을 동원하며, 피해자의 수색과 구조 및 이재민의 숙식을 관리하는 재해응급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단계가 재해관리의 구호단계이며 모든 과정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며 또한 가장 짧은 시간으로 긴급대피명령과 지시, 응급구호, 복구를 촉진시키는 조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대규모수해가 발생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기간중의 강우량이 1998년 보다 많았지만 주민들과 행정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수년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화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으로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 나. 1999년 경기도의 재해구호 현황

경기북부지역의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수는 총 8,383세대 26천여명으로서 임시수용시설 117개소를 운영하였고 전국재해대책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전국에서 답지한 의연품의 수가 총 187만여점에 이르렀다.

경기도에서는 비축하였던 생필품과 취사도구 8,383세트와 쌀 20kg 1포,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류세트를 이재민 전 가구에 지급하여 생계지원과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호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하면 외부와 고립된 주민들은 기초적인 일상생활체계가 순식간에 붕괴되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주거지가 침수된 경우에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복구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어 대피 혹은 수용시설에서의 구호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마다 중앙정부의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한 자체구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재해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력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지난해 수해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파주시의 경우 문산초등학교에서는 987세대 2,811명까지 수용하면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급식지원을 받았다. 또한 전국에서 답지한 구호품은 접수한 후 군인 100여명을 동원하여 배분작업을 해야 하는 등 구호품 전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계속되는 재해경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재민구호 과정에서의 이재민관리와 구호품 지급기준 설정, 민간과의 파트너쉽구축 등 이재민구호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하였다.

#### 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과제

##### ■ 재해구호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산망 구축

이재민구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재민 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별로 지급한 구호품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어 중복지급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구호체계의 전산화가 최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행정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일선구호담당자들의 업





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실제 구호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자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트북이나 휴대가 간편한 PDA장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구호후 복구비의 지급시에도 관계부서가 모두 손쉽게 공유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재해구호품 지급기준설정 : 구호물자준비의 이원화

재해에 따른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재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것을 충분하고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호품 전달과정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재해대책협의회, 적십자사, 기업, 개인 등이 총 망라된다.

구호물품의 지급세트도 이원화하여 수용시설에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초기응급구호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물품세트와 귀가할 때 필요한 물품세트로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십자사, 재해대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구호품 지급이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협조체계구축 또는 광역적인 배분체계의 구축이 바람직할 것이다.

### ■ 권역별 이재민구호품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구호품들이 지원되는데 이를 접수·관리하는 창구가 시군, 도, 적십자사, 재해대책협의회 등 다기화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구호품의 접수와 전달창구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와 시군이 행정계통으로만 구호관련업무를 처리하고 민간위탁(적십자사 등)하는 방안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중앙단위(재해대책협의회 등)의 인력이 즉시 파견되어 이를 관리하여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형재해가 발생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할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기도 하며 비축물자의 관리·배분을 위한 대형창고의 건립이 중앙 또는 지방 차원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 ■ 구호활동에서의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구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호활동을 수행할 때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부문에서 특히 적십자사 등과 같이 구호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







체들은 경험을 통한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급식지원에 있어서는 급식차량외에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이며 기업에서의 사회봉사차원의 급식지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식지원의 수준이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주어야한다. 한편 재해구호기간중의 훈련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훈련이 있기 때문에 봉사인력에 대한 사전인증(교육 등)제를 시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라. 맺음말

재해현장은 전쟁을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호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현장에서 이재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동시에 구호물자의 접수와 관리업무까지 담당할 경우 행정부담뿐만 아니라 이재민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구호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관련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외부환경체제를 갖추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외부에서의 협조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보도부문과 중앙의 사후감사일 것이다.

일본의 NHK는 재해대책규정을 마련하여 평상시에도 기자, PD, 엔지니어들에 대해 재해에 관련한 훈련을 시키고 어떠한 재해에도 당황하지 않고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영국 BBC의 경우 “프로듀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해보도에 유익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후감사가 통제지향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에서 구호상황의 담당공무원들의 경직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수해를 겪으면서 특히 구호부분에서의 적십자사활동은 매우 우수적이었으며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진 반면, 중앙단위의 구호체계의 미구축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인 전산망구축과 구호품전달체계에 관한 개선책이 실행단계에 옮겨질 수 있다면 지역단위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구호물품 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해구호체계 개선방안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현재 구호물품의 상당 부분을 의연물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언론사에 기탁되는 의연물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재협)를 통해 재해지역 시·군·구에 전달하고 해당 시·군·구는 읍·면·동사무소로 전달, 리·반장·새마을지도자 등이 수령 이재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가. 의연물품 접수 및 전달실태

- 재해기간 중 각계각층으로부터 모집한 의연품은 주로 기업체 기탁물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규격없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임.
- 본 협의회의 인력 및 지하에 설치된 물품보관 창고(200평 규모)를 감안할 때 기탁 물품의 규격, 품질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함.  
※단기간(재해초기 1~2주)에 대량의 물품이 기탁
- 재해기간 중에는 국민의연품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물품 품목만을 확인하고 접수된 상태(박스포장)대로 유지,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불량품이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전달되어 민원이 제기됨

나. 의연물품 접수현황

년도	초기기탁물품 (재해발생 ~10일)	중기기탁물품 (11일~20일)	말기기탁물품 (21일~30일)	기타 (사전 비축분 외)	합 계
1998년	1,263,616 (34%)	1,524,445 (40%)	466,499 (12%)	537,426 (14%)	3,791,986점
1999년	1,731,215 (58%)	558,994 (19%)	169,729 (5.7%)	530,300 (17.3%)	2,990,238점

※ 구호물품 접수는 초기와 중기에 대부분의 물품접수가 이루어짐







### 다. 의연물품 관리의 문제점

- 보관창고(지해) 협소로 의연품 보관에 한계가 있으며 의연물품은 재해발생 3~4일 경과 후 접수되므로 초기구호에 문제점이 있음
- 많은 의연품이 단기간 답지하므로 정확한 물품수량 파악이 불가함
- 노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우천시(특히, 재해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재해지역의 물품소요량, 균등 배분 계획과 특정물품의 사용용도,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달함으로써 민원 야기  
(보관장소의 부족 등으로 거의 기탁 순서대로 지원됨)

### 라. 개선사항

#### ■ 단기적 개선방안

- 재해구호물품을 응급지원물품, 중·장기 지원물품으로 나누어서 기탁하도록 유도
  - 응급지원물품 : 내의, 세제류, 생수 등 재해초기에 긴급지원되어야 할 물품
  - 중·장기 지원물품 : 건축자재, 가구 등 응급복구 완료시 지원되어야 할 물품
-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재민에게 절실한 물품이 기탁될 수 있도록 유도
- 기탁을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기탁서를 받고 복구 상황에 따라 본 협의회에 전달 후 재해지역에 전달
- 재해초기 응급지원물품 확보를 위해 장류협회, 샘물협회 등 각 단체와 재해발생 이전에 업무협조를 통해 재해초기 응급지원물자를 신속히 확보토록 한다.

#### ■ 광역창고의 건립

- 부지 10,000평 규모에 구호물품 관리, 보관시설을 갖추고 대형 차량이 드나들며 작업할 수 있는 창고(약 5,000평)를 건립한다.
- 사전에 긴급지원물품을 셋트화하여 재해 초기에 지원함으로써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분담 및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재해 발생시 기탁되는 의연품은 분류 구분작업을 통하여 지원가능하도록 하고 부족 물품은 재해발생 전에 구입하거나 구매선을 확보, 재해발생 즉시 지원토록 한다.





## II. 초 점

- 우천시에도 차량이 창고안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
- 피해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우선 전달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광역창고로 와서 필요물품을 수령할 수도 있도록 한다.(시·군·구의 업무 간소화 및 시·군·구 필요 물품만을 수령 이재민 구호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광역창고건립 후 구호활동 비교

구 분	창고건립 이전	창고건립 이후	비 고
재해발생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물품 보관장소 등의 부족으로 셋트화가 불가능하며 물품을 품목별만 보관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하여 물품을 복구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응급구호품을 셋트화(20,000셋트)하여 보관 관리</li> </ul>	
재해발생초기 (응급구호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우선 재해지역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재해지역에서 분류하여 이재민에게 전달</li> <li>• 직접 재해지역에 기탁되는 물품 접수 및 과부족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호품 업무로 인해 다른 구호업무는 마비되고 있음</li> <li>• 품목별 수량 및 상태 파악에만 많은 시간 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수에 맞추어 자치단체에 구호품 셋트를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수용시설에 직접 전달</li> <li>• 재해지역에서 다시 품목별로 정리, 분류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한 이재민구호를 이룰 수 있다.</li> <li>• 특정품목이 과부족, 과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 짐</li> </ul>	
재해복구시기 (장기구호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 구호물품을 보관 적재할 장소가 협소하여 거의 기탁되는 순서대로 재해지역에 전달하다보니 재해지역도 구호품 보관 및 배분에 많은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됨</li> <li>• 물품이 분류되지 못하고 복구계획에 맞추어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 물품의 효율성이 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분류된 구호물품을 복구 정도에 맞추어 지원함</li> <li>• 재해지역은 필요물품만을 지원요청하고 중앙은 이 물품만을 전달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성 증대 및 재해지역에서 재분류하고 폐기처분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li> <li>• 언론홍보를 통해 물품이 중앙으로 전달될 수 있다.</li> </ul>	일본 고베지진 의 경우 구호물 품을 재해지역 에 직접 전달하 지 않고 중앙창 고에서 배송지 점을 거쳐 재해 지역에 전달, 효 율성을 극대화
재해복구 완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기탁은 계속 이어지나 이를 보관할 장소가 협소하므로 필요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재해지역으로 계속 전달</li> <li>• 중복수송, 무계획적인 물자의 공급으로 인해 의류 등 많은 구호품이 폐기처분되고 있음</li> <li>• 비효율적인 구호품 전달 등으로 집단 민원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 기탁되는 물품은 중앙에서 접수하여 필요품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차후 재해에 대비</li> <li>• 동절기를 앞두고 추동의류 등을 전달하여 이재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필요물품만을 전달하므로 구호품의 효율성이 커지고 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이룰 수 있다.</li> </ul>	







### 3. 재해와 보험(초점-3)

#### (1)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고찰



김 양 수  
국립방재연구소 연구실장

##### 가. 서 언

재해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생활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재해의 경우 자연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녕은 상당부분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다.

최근의 산업의 발달과 복잡한 사회구조는 재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복지 향상과 함께 재해로부터 안전이라는 국민적인 욕구분출과 함께 개발정책은 재해에 대한 대책도 변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재해대책은 방재시설물 건설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과 재해특성을 고려한 비구조적인 대책이 일체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조적 재해대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의한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구조적 대책만으로 재해 피해를 경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구조적 대책과 함께 비구조적 대책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비구조적 대책의 하나로 현재 추진중인 우리나라 재해 관련 보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재해보험은 국민복지 증진의 역할면에서는 사회보장성 보험이며 보험제도를 통한 재해관리 측면에서는 특수보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나. 홍수 보험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산피해의 대부분은 홍수로 인한 침수 및 유실에 의한 것이다.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복구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홍수피해 이전의 상태로 자력갱생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는 홍수피해 발생시 신속한 자력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홍수위험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구조 홍수대책의 하나로서 정부에서 추진중인 홍수보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나-1. 홍수피해의 의의

보험제도는 「다수의 불확실한 동질의 위험을 결합하여 일정한 확률적 규칙성을 갖고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을 위험의 결합에 의한 평균손실로 대체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제도」로 정의되는데, 위험의 결합(Risk-Pooling)을 통하여 위험의 분산(Risk-Spreading)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제도이다. 또한 홍수보험은 보험분류상으로는 재산보험이면서 한편으로 사회보험적인 측면이 요구되는 보험으로 규정할 수 있다.

홍수보험의 역할은 크게 비구조적인 재해대책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의 피해는 개인이 일정부분 담당하는 제도이므로 자주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홍수보험의 기능은 크게 일반보험적 기능과 특수보험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보험적 기능은 경제적 안정성 제고, 경제·사회안정에 기여, 경제주체들의 능률 제고, 경제주체들의 신용도 향상 등이며 특수보험적 기능은 홍수위험지구 관리의 체계화, 피해액의 시간적 분산, 소득의 재분배 향상 등이다.

### 나-2. 화재보험 및 풍수해위험담보 특별약관

현재 국내에서 홍수위험만을 담보하는 단독상품은 없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주는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보험종목별 특별약관에 의한 담보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All Risks 담보방식을 취하고 있는 봉합보험은 보통약관에 담보하는 경우도 있다.

홍수위험관련 보험은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또는 동산종합보험 등에서 보통약관에 부대되는 특약의 형태로 풍수재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며, 홍수위험은 풍수재위험







의 일부에 포함된다.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및 효율은 동일하지만,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 목적에 따라 산림풍수재담보특약과 야외간판풍수재위험담보특약에서도 홍수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국내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의 경우 일반 공장물건은 1973년 6월, 주택물건은 1980년 6월에 각각 재경부의 인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담보형태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특약을 부대하고 별도의 특약보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동산 제외)에 대해서는 특수건물 특약에 의거 태풍, 선풍,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를 별도의 추가보험료 없이 담보하고 있다. 이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체배상책임 담보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에 대한 대가적 혜택의 하나로 풍수재위험을 보상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나-3. 담보위험의 설정

홍수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목적물은 크게 재물사고와 인사사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주택 및 공장, 주택내의 가재도구, 공장내의 제품 또는 반제품, 공장기계설비, 자동차 또는 선박의 침수 및 파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농경지와 관련된 피해로 농경지의 유실과 농작물의 피해를 들 수 있다.

셋째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피해로 관공서의 침수 및 파손, 공공도로 및 시설물의 유실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재물사고와 달리 인사사고로 주민의 사망 또는 실종, 부상과 같은 신체상의 피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홍수사고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피해 중에서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작물의 피해는 앞으로 시행 예정인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여 결국 홍수보험에서 일반주택과 가재도구, 공장건물과 제품 또는 반제품, 기계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사유시설물의 피해와 주민의 사망과 같은 신체상의 피해가 주보험 목적물이 될 수밖에 없다.



### 나-4. 보상기준

홍수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보험의 적절한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즉,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불가능한 보험료의 한도내에서 보상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나태해지기 쉬운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예방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보상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생한 모든 피해액에 대한 완전보상(Full Compensation)을 전제로 하는 상품개발은 홍수보험에 적합치 않다.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보상을 채택한다면 그에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동 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부담까지 가중시키게 된다.

둘째 홍수피해의 일부는 거주자의 위험 회피노력에 의해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보상제도는 곤란하다. 즉,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과 지역주민의 홍수피해 경감 노력사이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손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홍수피해시 적절한 보상수준은 재생산이 가능한 정도로만 설정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이 적당하며 과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홍수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의 보상 메카니즘을 통해 부분적으로 사전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홍수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은 홍수위험이 적은 지역보다 저렴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용의 감소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있다. 물론 홍수위험도에 대한 정보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완전히 반영되기는 어려우나 국내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사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기존의 화재보험 풍수재위험담보특약 및 일본의 홍수위험관련 보험제도의 보상수준을 감안해서 평균 손해액의 70~80%수준에서 보험금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상품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5. 홍수보험 제도의 시행방안

홍수보험의 경우 위험의 크기가 매우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위험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보험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 중 역선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역선택이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고 위험이 작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성립이 곤란하며 성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

홍수위험이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홍수위험은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고 피해규모에 비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며 심각한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 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홍수보험을 민영보험회사를 통한 임의보험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가입률이 더욱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험의 분산이 불가능하여 보험이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형태를 택해야 할 것이다. 단 과거의 홍수피해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홍수위험지구를 지정하고 홍수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홍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은 임의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동 보험을 의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수반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의무가입대상의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력이 가장 낮은 의료보험조합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수위험지구내 주민의 경제력을 파악하여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관련 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즉, 홍수보험의 의무화를 위해서는 자연대책법내에 홍수위험지구의 설정, 보험가입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고 재해대책기금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홍수재해 뿐만 아니라 전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보험적용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 다.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은 풍수해, 냉해,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병충해, 조수해와 같은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으로 농림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이 1979년부터 연구 도입을 추진



하고 있는 공영보험이다.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작목은 우선적으로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시행과정 중 각종 작물, 축산, 잠업, 원예 등 모든 작목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토록 하고 있다. 담보사고는 자연재해로 한정하지만 조수해, 병충해 등이 자연재해 또는 기상이변에 의한 것인 경우 자연재해로 포함시킨다.

가입방식은 의무가입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농가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의 가입방식을 택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의무 가입과 임의가입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인수는 보험요율의 차별화와 기준 수확량 설정 및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필지단위 인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는 평년 수확량의 70%수준으로 한다.

### 라. 재난 보험

재난은 인위적 행동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여 재난 관리법에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원인행위가 자연임에 반해 재난은 행위 주체가 분명하며 배상 대상자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재해에 비해 재난은 교통사고와 같이 소규모로 많이 발생하나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이 대형사고도 가끔 발생한다. 1995년부터 1997년 까지 통계를 보면 3년동안 재난 발생건수는 87만여건이며 사상자는 107만명, 재산피해는 2조 3천여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가 전체 건수의 88%정도를 차지하였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당시의 사회적인 관심과 배상주체의 경제력 능력에 따라 배상(보상)액에 큰 차이가 있어 피해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사고수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재난 발생시 피해자 배상(보상)에 대비하고 보험가입자와 손해보험회사 등의 사고예방 활동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보험제도를 적극 개발·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 재해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국정 개혁 100대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건설공사,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4개 분야에 걸친 15종의 재난 보험제도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저 보험가입금이 낮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의 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고 개연성이 크며 재난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마련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임의 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고예방 활동을 촉진할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난 관련 의무보험 등 현행 제도와 외국사례 등에 대한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난보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차 용역이 끝나고 2차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새로 추진되는 재난보험은 의무보험으로 2000년 말이면 상품개발 방안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 마. 결 언

오늘날 현대사회는 도시화 및 산업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시설의 대형화 및 밀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해의 발생빈도와 심도를 증대시키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대규모 재해발생시 피해복구 및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하고 사고수습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연재해인 경우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대형 재난인 경우 원인 제공자 또는 배상 주체가 경제적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 국민은 재난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최종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력갱생에 필요한 피해 복구비를 제공하고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민간 방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해보험은 좋은 비구조적 재해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제도의 시행전에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일이 재해보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국립방재연구소/ 홍수보험제도 도입 방안(1998)
- 2) 국립방재연구소/ 홍수보험제도 시행방안 연구(1998)
- 3) 이경희/ 재해와 재난/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 제1권 제2호(1999)
- 4)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재해재난 배상·보상보험 제도화 방안(1999)



### III. 구호실적(재협 구호실적)

#### 1. 1999년도 모금 및 구호실적

재협은 1999년도에 476억원을 이재민구호를 위해 사용했다(부록/ 통계자료 : 1999년도 재해의연금 시도별지원 현황 참조)

1999년도 7월 23일부터 시작된 호우는 7월 31일부터는 폭우로 바뀌며 경기 북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주민이 사망하고 가옥이 침수되는 등의 재해로 이재민이 속출하자 재협은 8월 2일부터 전국 언론기관을 통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재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이재민에게 동포애를 전달하여 이재민이 재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7월말에 발생한 호우피해 구호를 위해 8월 12일 83여억원의 구호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총 476억원의 의연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99년도에 발생한 재해 원인과 피해상황, 그리고 구호실적과 모금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1999년도 재해발생 원인과 피해상황

##### ① 1999년도 재해발생 원인

1999년도 기상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변화로 인해 돌발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기상특보는 호우 310회, 태풍 85회, 폭풍 661회, 대설 등 93회로 총 1,149회가 발효되었다. 1999년도 장마는 6월 17일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6월 23일 시작되어 중부지방은 7월 10일, 남부 및 제주도지방은 7월 20일 종료되었으며 99년도 장마의 특징은 장마기간이 평년보다 짧았으며 전체적인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마기간 총 강우량이 인제 43mm ~ 서귀포 741mm로 지역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장마기간 종료후 경기 및 강원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이며 돌발적인 특성을 지닌 집중호우가 빈발하였으며 특히 7월 30일 ~ 8월 2일까지 한반도 북서쪽에서 발달한 강한 기압골이 남하하다 중부지방에 정체하면서 경기 및 강원북부 지방에 단기간에 300 ~ 800mm의 강우







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시간당 30 ~ 80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1999년도에 태풍은 총 22개가 발생하여 이 가운데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제7호 태풍 「올가」와 제18호 태풍 「바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999년도의 전체적인 강수량은 평년의 1,341mm에 비해 140%가 증가한 1,871mm가 내렸으며 지역별 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인명피해 : 명/ 재산피해 : 억원)

지역별	평년	1999년	증 감	비교 (%)
평균	1,341	1,871	530	140
서울·경기	1,265	1,587	322	125
강원	1,374	1,790	416	130
충청	1,235	1,470	235	119
호남	1,306	1,724	418	132
영남	1,271	1,911	640	150
제주	1,598	2,748	1,150	172

[중앙재해대책본부 자료]

## ② 1999년도 재해분석

1999년도 재해는 호우 및 태풍 등이 주도하였으며 총 8회의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하여 89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1조 2,19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인명피해 164명의 50%수준이며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 평균 재산피해액 5,799억원의 210%수준으로 점차 인명피해는 줄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 가장 큰 피해는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경기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함께 강풍을 동반한 제5호 태풍 「니일」과 제7호 태풍 「올가」의 내습이 겹치면서 문산읍과 철원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호남과 충청지방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닐하우스 파손 및 과수의 낙과피해가 발생하였다.

9월 10일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청 및 영남지방에 집중호우가 내

### III. 구호실적

러 부산시 인근 황령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9월 17일 ~ 9월 24일에는 제17호 태풍 「앤」과 제18호 태풍 「바트」가 내습하여 영남지방 등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1999년도 재산피해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사망·실종자가 총 89명이고 이재민이 총 7,415세대 26,656명이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 75,948ha, 주택파손 2,502동, 주택침수 13,986세대, 선박 611척, 하천 5,899개소, 수리시설 2,076개소에 이르는 등 총 1조 2,197억 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하였다. 이를 시·도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인명피해 : 명/ 재산피해 : 억원)

구분	인명피해	재산피해	구분	인명피해	재산피해
합계	89	12,197	강원	17	2,827
서울		105	충북		167
부산	1	87	충남	3	804
대구	1	27	전북		295
인천	4	110	전남	8	1,265
광주	5	116	경북	18	1,150
대전		18	경남	4	1,084
울산		2	제주	10	294
경기	18	3,846			

#### (2) 1999년도 재해의연금 모집 실적

##### ① 1999년도 재해의연금 모금 내역

전국의 언론사를 통해 모금된 1999년도의 재해의연금은 520억 600여만원을 기록했다.(부  
록/ 통계자료 : 1999년도 재해의연금 모금현황 참조)

그런데 99년도 의연금 모금은 기탁자의 직업별 구성비율이 97년까지의 경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과 ARS모금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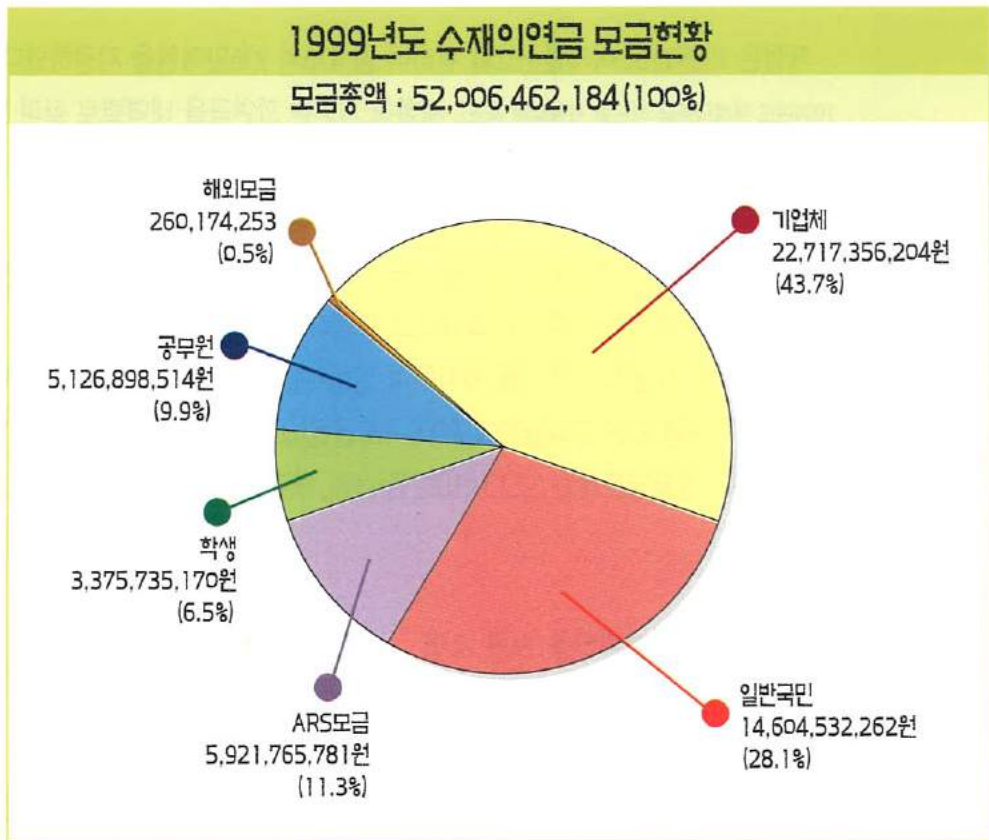




99년도 재해의연금 기탁자의 직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기업체 기탁금이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있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0~1996년까지의 연평균 54.7%보다 11%나 감소되어 IMF사태 이후의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기탁금은 1990~1996년도 까지의 연평균 27.1%보다 오히려 12.3%가 증가된 39.4%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 협동심을 발휘한다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라고 보고 싶다.

그리고 99년도의 모금에 있어 『ARS모금』이 1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하겠는데 기탁자의 직업별 의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는 구성비율)



### ② 1999년도 재해의연금품 접수내역

재해가 발생하면 전국 각지에서 의연품이 답지한다. 1999년도의 의연품 접수내역을 살펴

### III. 구호실적

보면 식품류를 비롯한 의류, 약품 등 18종에 267만여점이나 되며 이를 접수일자 기준 가격으로 환산하면 267억여원에 이른다(부록/통계자료: 1999년도 의연품 접수 및 전달현황 참조)

재협은 접수 즉시 구호기관의 요청 및 피해규모에 따라 재해지역에 지원하고 이재민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다음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 (3) 1999년도 이재민 구호 실적

##### ① 1999년도 의연금 지원실적

재협은 1999년도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총 476억 936만여원을 지원하였다(부록: 통계자료/1999년도 재해의연금 시도별 지원실적 참조). 재협이 지원한 의연금을 내역별로 살펴 보면 법정구호비로 15,051,32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특별위로금이 31,923,660천원, 기타 긴급 구호물품 구입 및 운송비 등이 634,388천원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특별위로금의 지원비중(전체지원액의 67%)이 높아졌는데, 이는 의연금의 성격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8,572,967천원으로 전체지원액의 39%를 차지하며 인천시는 3,179,479천원(6.7%)이 지원되었다. 태풍 “을가”피해를 입은 전라남도에도 7,901,436천원(16.6%)이 지원되었고, 태풍 “앤” 및 “바트”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에는 3,113,010천원(6.5%), 제주도는 3,587,560천원(7.5%)이 각각 지원되었다.

##### ② 1999년도 재해의연품 지원 내역

###### - 금액으로 환산하면 267억원 해당

재해가 발생하면 전국 각지에서 의연품이 답지한다. 1999년도의 의연품 전달 내역을 살펴 보면 식품류를 비롯한 의류, 약품 등 245만여점이나 되며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97억여원에 이르는 엄청난 량의 구호물품을 재해지역에 전달하였다.(부록: 통계자료/1999년도 의연품 접수 및 전달 현황 참조)

재협은 의연물품을 재해지역 시·군·구의 요청 등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재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일부 잔량은 다음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 1999년도 의약품 지원현황

품명	거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포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봉화군	부여군	기타	합계
의 류(점)	3,200	84,180	92,605	10,694	63,357	22,794	54,950	19,800	22,706	2,400	2,600	18,024	397,310
침구류(매)	200	2,500	2,829	300	2,213	504	1,804	200	219	162	350	218	11,499
버 너(대)	200	500	1,000	504	704	504	380	424	408	150	300		5,074
생필품(점)	680	189,336	223,305	4,050	64,506	18,576	40,824	18,024	8,822	11,830	8,008	7,359	595,300
신발류(족)	220	1,050	7,219		270	1,300	560	1,415	1,360	240	1,000	1,167	15,801
세제류(점)	690	10,137	10,035	1,300	3,012	2,900	1,600	1,060	3,600	1,700		4,641	40,675
의약품(점)		55,220	63,148		27,972		24,370	13,869			78	335,628	520,285
학용품(점)		439	446		255	120	150	20,381			5,700		27,491
식품류(점)		151,542	146,940	7,800	106,283	23,152	98,321	44,406	20,750	2,000	2,828	26,471	630,493
생수(상자)		4,824	26,079		14,585	5,280	2,596	939					54,303
라면(상자)		1,200		500	1,000	200	350	800	500		500	700	5,750
식기류(점)		1,200	1,300		1,000	688							4,188
양수기(대)			26										26
건축자재		33,030	33,000		2,000	12,000	20,000						100,030
백 미(kg)					1,600						1,962	700	4,262
가 구(점)			238										238
벽 지(평)		3,840	15,224		3,500		13,039						35,603
기 타(점)		3,428	294		800		1,930						6,452
계	5,190	542,426	623,688	25,128	293,057	88,018	260,874	121,318	58,365	18,482	23,326	394,908	2,454,780
수송차량	1	148	187	2	43	58	88	8	5	1	2	2	545

### III. 구호실적

#### ③ 1999년도 의연금품 홍보활동

재협은 1999년도에 접수된 수재의연금과 의연품의 접수내역 및 지원현황을 기탁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였으며 국회 전자 민주주의 연구회(사이버파티)와 함께 4대 PC통신(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과 인터넷에 약 2개월에 걸쳐 수재의연금 모금 및 집행내역·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네티즌들의 공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다음은 재협이 수재의연금 모집 및 집행을 완료하고 4대 중앙일간지 등에 모집 및 집행현황을 공고한 내용입니다.

#### ■ 공고계재신문

- 동아일보사 : 9월 22일 A3면 하단
- 한국일보사 : 9월 22일 23면 하단
- 조선일보사 : 9월 22일 4면 하단
- 사회복지신문 : 10월 18일 3면 하단
- 중앙일보사 : 9월 22일 6면 하단

## 수재민에게 보내주신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모아진 수재의연금은 454억원입니다

ARS를 포함한 방송사 모금액은 222억원, 신문사를 통한 모금액은 184억원,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직접받은 의연금은 48억입니다.

수재의연금은 41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재해구호비(139억원)			구분	특별위로금(280억원)		
	기준	인원(세대, 등)	금액		기준	인원(세대, 등)	금액
사망·실종	10,000(세대원 5,000)	65명(세대원 32명)	490,000	사망·실종	10,000	65명	650,000
부상	5,000(세대원 2,500)	77명(세대원 31명)	282,500	부상	5,000	77명	385,000
주택파손	일2,068원(2~6개월)	28,499명	1,384,326	주택전파	3,500	719등	2,516,500
				주택반파	2,000	1,137등	2,274,000
생계보조	4,000~5,000	14세대	33,000	주택완수	1,100	12,518세대	13,769,800
생계지원	양곡 2~10가마	65,375세대	11,596,856	영세상가	1,100	3,201세대	3,521,100
세입자보조	1,500	1세대	1,500	침수			
주택침수	600	155세대	93,000	월등대책비	300	7,961세대	2,388,300
주택파손	전화 2,700	20등(전화8)	37,800	연료비	120~360	7,961세대	2,464,680
	반파 1,350						

※의약품, 리면, 모포 등 의연품 총 244만점은 11개 수해지역에 전달하였습니다.

모금잔액은 다음 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번에 집행하고 남은 35억원은 보관하였다가 다음에 재해가 닥쳤을 때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차용봉**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 방상훈**





## 2. 2000년도 산불피해 현황

2000년 4월 7일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계속 번져 10여일간 강원도 영동지역 및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산하를 태우는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번 산불은 강원도 전체 산림의 1.7%에 해당하는 23,448ha의 산림을 태우고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99세대 8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직접적인 피해액이 1,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까지 추가해보면 총 2,7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산불의 진화를 위하여 민방위동원령이 발효되고 민·관·군 합동으로 연인원 13만 명이 동원되었고 헬기 280여대가 동원되어 진화작업에 나서 4월 15일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 언론기관을 통한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의연금품을 신속히 지원하여 불의의 산불로부터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재기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 ● 산불피해 현황

- 인명피해 : 17명(사망 2명/ 부상 15명)
- 주택피해 : 321동(11,700백만원)
- 농기계 등 : 818대(1,629백만원)
- 가재도구 외 : 11,956백만원
- 군시설 : 8,430백만원
- 이재민 : 299세대/ 850명
- 축사 및 부속사 : 196동(1,822백만원)
- 가축 : 한우 14두/ 닭 1,816수 등(664백만원)
- 산림피해 : 23,448ha(63,897백만원)

2000년 4월 7일 ~ 16일 강원 및 영동지방 산불피해 현장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재협구호활동)

### 1. 2000년도 재해모금 계획

#### (1) 2000년도 재해모금 계획

재협은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사전에 재해모금계획을 확정하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연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즉시 이재민구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모금방법은 예년과 같이 전국의 신문·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언론기관에서 직접 의금을 기탁받는 형식과 ARS모금을 함께 혼용토록 할 계획이다.

의연물품의 경우는 언론기관에서 직접 기탁받지 않고 재협으로 안내한다. 이것은 해당 언론사인 경우 물품을 보관·적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를 다시 재협으로 운송하는 데 따른 물건의 파손 및 식품류 등은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 의연물품은 재협에서 직접 기탁을 받아 재해지역에 신속하고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의연물품은 3~5일 이후에나 기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위하여 사전에 확보된 구호물품을 품목별로 분류·보관하고 있으며 필요 과부족 물품은 구매하거나 구매선 등을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이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재의연금의 경우 재해로 인한 동일한 피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지역 및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언론기관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기탁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지역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의연금은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사용한 금액만큼은 정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만일 수재의연금에 지정기탁을 허용할 경우 지정기탁이 대도시나 연고 도시 등에 집중되어 농촌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음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의 2000년도 재해모금계획서이다.







## 2000년도 재해모금 계획서

### (1) 목 적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동포들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방과 사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왔으며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전통은 지금도 연면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천재지변이 발생되면 신속히 재해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의연금품 모집 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실의에 잠겨있는 이재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2) 모금목표액 : 500억원

### (3) 모집기간 : 대규모 재해발생시

### (4) 모금내역

가. 기탁모금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각 신문사 및 방송사등에 기탁되는 국민의연금품과 해외동포로부터 기탁되는 의연금품

라. 방 법

- (1) 각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탁되는 의연금은 중앙 일원화방침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및 유선방송협회에서 집금하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전달토록 한다. 단, 신문·방송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 언론사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송금한다.
- (2) 중앙언론 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령하여 재해지역의 행정기관의 요청및 재해지역 이재민가구수와 재해피해액에 의거 균등하게 배정토록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

하고 재해피해지역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시·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여 이재민에게 배정토록 한다. 단, 재해발생지역이 아닌 시·도 및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적십자사에 전달하거나 본협의회와 협의하여 전달토록 한다.

- (3) 각 시·도 및 시·군·구에 기탁되는 수재의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대행 언론기관이나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토록 한다.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 (4) 재해지역 행정기관에 지정기탁된 수재의연금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통보하여 재해의연금 지급시 정산토록 한다.

- (5) 언론기관은 특정인이나 전달처를 지정한 수재의연금품은 접수할 수 없으며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희망할 경우 직접 희망지역에 전달토록 한다.

- (6) 공무원 모금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증사급 이상,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 금융기관근무 임직원 등으로 부터 이재민구호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해의연금으로 기탁토록 하고, 모집된 의연금품은 언론기관에 전달토록 협조의뢰 한다.

- (7) 기업체 모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산하회원 기업체에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이재민구호를 위한 의연금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록 의뢰한다.

- (8) 각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재해의연금 모금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뢰한다.

### (5) 의연금품 사용

가. 모금된 의연금은 재해구호비등 복구비용부담기준(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정부종합구호 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지원기준 별표 참조)

나. 모집된 의연품은 재해지구 재해대책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에 배정하여 이재민에게 배분 하도록 한다.

다. 의연금품 모집과 복구사업이 종료되었을때에는 모집내역 및 사용실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동포애에 감사하는 뜻을 표시하도록 한다.





## 2. 2000년도 재해의연금 지원 기준

의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법정구호비에 포함되어 1차 지원되며,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96호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제정)

구분	종별	단위	지 원 액	재 원	
사망자 및 실종자	위로금	인	세대주	10,000천원	의연금 100%
			세대원	5,000천원	
부상자	위로금	인	세대주	5,000천원	의연금 100%
			세대원	2,500천원	
응급생계구호비	최초7일간	1인/1일	2,343,08원	국고 70% 지방비 15% 의연금 15%	
장기생계구호비	1~3개월	1인/1일	2,160,93원	국고 70% 지방비 15% 의연금 15%	
생계보조비	1급	세 대	5,000천원	국고 50% 의연금 50% 가구의 주수입원이던 자가 사망 또는 실종 및 부상한 경우 그 유가족 부상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등급이상	
	2급		4,000천원		
침수주택수리비	침수주택	세 대	600천원	국고 100%	
주택복구비	전파주택	동	27,000천원	국 고(20%)	5,400,000
				지 방 비(10%)	2,700,000
				장기저리융자(60%)	16,200,000
				자 부 담(10%)	2,700,000
	반파주택	동	13,500천원	국 고(20%)	2,700,000
				지 방 비(10%)	1,350,000
				장기저리융자(60%)	8,100,000
				자 부 담(10%)	1,350,000
세입주자 보조비	월세 및 전세금	세 대	3,000천원범위 실계약금	국 고 80% 지방비 20%	
기타 지원 (무상 양곡지급 2ha 미만농가 및 유사한 규모)		세 대	30-50% : 양곡3가마 50-80% : 양곡6가마 80% : 양곡 10가마	국 고(70%) 의연금(30%) • 의연금대신 전액 국고부담기로 합의	



### 3. 의연금 관리 및 운용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96호)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연금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모집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 제3조 (의연금품의 운용계획)

- 1)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의연금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의연금품의 운용계획은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의연금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의연금품의 사용)

의연금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1) 재해이재민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 2)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 3) 모금경비 및 협의회 운용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 (초과보유 의연금품의 특별사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금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 및 수량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이재민의 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

- 1)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부상자(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는 500만원의 위로금
- 2) 재해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가구에 대하여 전과는 300만원, 반과는 150만원, 침수(주택 및 영세상가)는 60만원의 주거보조비
- 3)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의 연료비
- 4) 이재민 중 장기구호세대에 대한 세대당 50만원의 명절특별위로금(설날, 추석날,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로서 재해발생후 처음 맞게 되는 날에 한한다)
- 5) 재해지역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지원하는 물품



### 제6조 (의연금품의 수급관리)

의연금품은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 위임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훈령 제5호 1995. 2. 27)의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협의회”로, “시·도지사”는 “협의회장”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의연금”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2000년도 재해구호 지침(보건복지부)

원 칙

- 신속한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실시
- 재해지역의 철저한 방역 및 의료구호
- 구호물자의 적기공급 및 과학적인 보관관리

(1) 개 요

가. 구호목적

한해·풍해·수해·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 및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사회질서 유지를 기하기 위함

나. 구호대상

(1) 중앙지원대상

- 재해구호법에 의한 기준
  -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이상, 광역시는 30세대이상, 시·군은 20세대 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 동일지역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명이상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동 규정 제3조)
-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시의 구 : 20억원
  - 광역시의 구·인구 30만명이상시 : 11억원
  - 인구 30만명미만의 시·군 : 7억원







(2)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발생시 재해발생 지역의 구호기관이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000년도 이재민 구호기준」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
- 구호비용은 구호기관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구호계획 및 구호체계

(1) 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 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재해구호 계획을 수립(년초)
  -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계획
  -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리계획
  - 재해지역 방역 및 의료구호 계획 등



(2) 재해구호기구 설치

- 중앙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재해구호활동반
  -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계확립

(2)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가. 시·도 재해구호기금 우선활용 지원

- 중앙지원대상의 경우일지라도 위로금, 생계보조금, 응급·장기생계구호비, 세입주자 보조비 및 침수주택 수리비 등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 국고 또는 재해의연금으로 정산한다.
- 인위재난의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

2000년도 이재민구호비지원기준에 따른 생계구호 및 기초 생활필수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다른 비용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및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협의 결정되는 바에 따라 관련예산으로 정산하거나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 나. 지원기준

#### (1)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

##### ○ 위로금(장의비 포함)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시·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 1,000만원
-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원인 경우 : 500만원
- 부상자는 사망·실종자 위로금의 50%지급

#### 위로금 지급시 유의사항

- 위로금은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급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비속, 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세대주는 성별, 연령,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한다.
- 단독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상 주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장제비 범위의 금액을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 ○ 생계보조금

재해로 인하여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활상태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생계보조금을 지급한다.

- 1급 :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여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2급 :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자활보호세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세대당 400만원 지원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인 경우에 한함

## (2) 이재민 생계구호

### ○ 응급생계구호

-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간의 응급생계구호를 실시한다.
- 시·도지사는 이재민의 응급생계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속히 조치한다.
  - 수용시설 확보(임시 주거시설 설치 포함), 식량, 의류, 침구, 취사, 난방도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 생활필수품의 제공
  -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 구호관련 단체와 협조

※시·도지사는 구호기준에 의한 구호 이외에도 자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기초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

- 기초 생활필수품 지원에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서 지원되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 장기생계구호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2개월내지 6개월(응급구호기간 포함)의 범위내에서 구호를 실시한다.

- 농경지 2ha미만 경작지로서 80%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와 소규모 농림시설, 소규모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소규모 어망·어구, 소규모 수산물 증·양식시설 및 수산 생물 등이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 6월까지
- 주택전파 : 4개월까지
- 주택반파 : 2개월까지
- 10톤미만 어선의 전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4개월까지
- 10톤미만 어선의 반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2개월까지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

※대규모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이내 구호실시 가능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세입자(전·월세)는 대상자에 포함한다.

### (3)재해복구지원

#### ○ 세입주자 보조비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 및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되 장기구호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사하는 날까지의 장기구호비를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된 장기구호비는 이를 공제토록 한다(무허가 주택세입자 제외)

#### ○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 주거용 방이 방바닥이상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침수주택 : 세대당 60만원

#### ● 수리비 지원의 유의사항

세입자가 피해대상자인 경우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은 세입자에게 지급하되, 주택소유자가 이를 복구하였을 때는 세입주자와 주택소유자 중 침수된 방의 수리비를 누가 지출하였는지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특별위로금은 세입주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 다. 방역, 의료구호 및 식품 위생관리

#### (1)방역활동

- 폭우 및 침수지역은 주 2회이상 방역소독 실시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부족시 긴급지원 요청
-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는 정기적으로 살충, 살균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홍보







## (2) 의료구호

- 사상자 구조 및 응급처리를 위하여 119구급대와 구급차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
- 사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
- 기동의료반을 편성하여 수해 발생지역에 상주 또는 순회 진료케 하고 부상자는 응급치료 또는 후송 조치
- 응급의료기관은 각 지역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조치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 이재민은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호기간동안 의료보호 1종 대상으로 책정하여 의료보호를 실시
- 이재민 공동수용소에는 의료진을 상주 근무하도록 하여 환자발생 즉시 대처



## (3) 식품위생 관리

- 식품접객업소
  - 침수된 원재료는 폐기처분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 금지
  -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 금지
  - 급수는 수도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한 후 급수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 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위생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관리 철저
  -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하고, 급수원은 잔류염소 0.4ppm이상을 유지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차아염소나트륨을 이용하여 소독하거나 반드시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 (3) 재해구호물자 관리

### 가. 적용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도에서 취득한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

재해구호물자(전시재해구호물자 포함)

-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기탁된 재해구호물자

### 나. 비축물자 확보

- 시·도지사는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5개년간의 시·군·구별 재해 발생현황, 물자지원 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량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으로 패키지화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변질 우려가 있거나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비축하지 말고 구매선을 사전에 파악관리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 재해구호물자 중 낡고 변질되어 사용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불용처분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처분하고 현실에 맞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한 물품은 반드시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다.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 시·도지사는 최근 5개년동안 평균 구호실적을 파악하여 교통, 재해 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전용창고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앙 비축창고 건립방안을 모색한다.
- 전시 구호물자는 별도 보관 관리하지 말고 재해 구호물자와 함께 보관·사용하되 그 내역을 비치·관리하고, 사용 즉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비축하여 비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재해구호용 비축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재해구호 물자관리권의 위임 및 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물자의 입·출고 및 보관물자의 망실, 훼손, 보관상태 등의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라. 물자의 사용

- 시·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보관중인 물자로 우선 지원한다.
- 시·도지사는 계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요청하거나 업체를 통해 구매 조달한다.
- 재해 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창고의 보관물자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시·도의 물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급조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다.
- 재해의연품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시·도지사는 의연품 보관창고를 확보하여 의연품의 효과적인 수급을 기한다.(불필요한 품목과 중복지원 방지)

## (4) 재해구호기금 관리

### 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 시·도지사는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매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는 1,000분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 관 리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되 기금의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주관국으로 한다.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

### (2) 관리공무원 임명

- 시·도지사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회계관리 직원 등의 책임

- 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 다. 기금의 용도

-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구호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체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 및 피해복구비(「2000년도 이재민 구호비지원 기준」에 의함)  
※중앙지원대상인 경우에도 기금으로 우선 지원후 정산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설치, 의류, 침구, 취사, 난방도구, 기초부식(장류등), 연료, 의약품 등 기초 생활필수품 구입
  - 구호업무 협력 소요비 및 위탁비용(재해구호법 제9조, 제12조)
  - 비축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비
  - 재해구호물자 및 의연물품의 운송, 조작 경비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라. 관리공무원의 임무

####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 기금관리 공무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금액은 전 5년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중앙지원분 포함)의 연평균액을 감안하여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 및 피해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저축성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2)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 기금출납 명령관은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 적립금을 미리 결정하여 이를 기금납부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금출납 공무원이 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기금수입대장에 기록한 후 수입일 또는 익일까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설치된 지정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3) 재해구호기금의 지출

- 기금출납명령관은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4) 장부 기록 및 유지

- 기금출납 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과 지출원인행위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5) 재해구호기금의 사용보고

-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

-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연금품 모집을 주관한다.
- 의연금품 모집 중앙 일원화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접수된 의연금품이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허가받은 기부금품 모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즉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

- 대규모 재해발생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일보고하여야 한다.

###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현황
- 의연금품 모금현황

### ● 대한적십자사

- 재해 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현황
- 급식소 운영 및 지원봉사 현황

## (6)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재해 발생시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일보고하여야 한다.

(Fax. 02)504-6232)

- 이재민 구호현황
- 방역, 의료, 위생 등 활동반 실적보고서

-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2000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체 재해구호세부시행지침
-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현황
- 재해구호기금의 예탁 및 집행현황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반기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창고별 비축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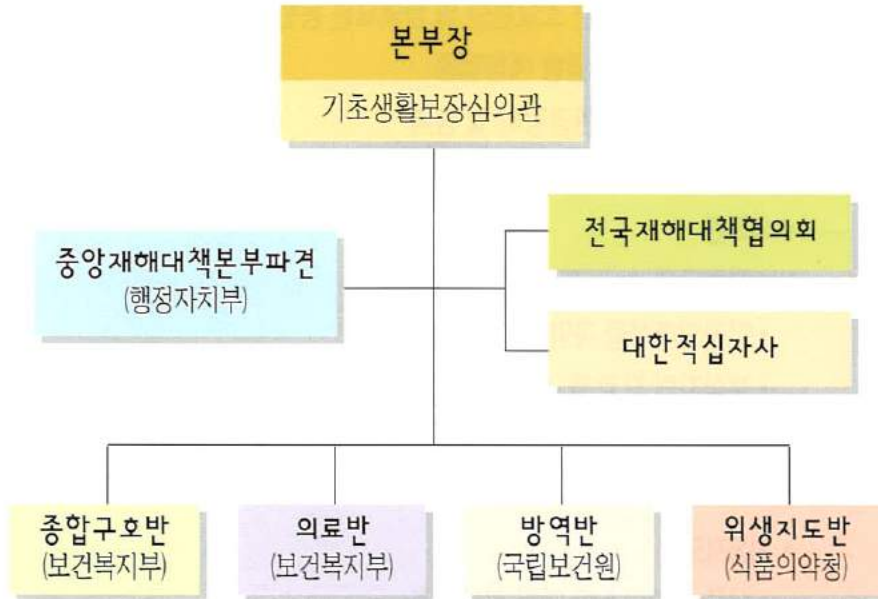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조직 및 임무

### 1 조직



### 2 임무

- 본 부 장
  - 구호활동본부의 모든 활동상황에 대한 지휘 및 통제
- 종합구호반
  - 재해 피해상황 및 이재민현황 파악
  - 재해구호활동 상황 취합보고(대한적십자사 활동 포함)
  -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업무연락
  - 이재민구호 소요판단 및 지원협조
  - 구호금품 긴급지원 요청에 대한 조치
  - 민간인의 식품·약품 등의 지원에 관한 조정

## IV. 2000년도 재해구호 계획

- 지역별 구호금품 균형지원 조정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및 대한적십자사 구호물품 지원요청

### ● 방역반

- 방역소독에 관한 소요판단 및 방역요원 동원배치
-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접종
- 이재민수용소 환경정비 및 방역

### ● 의료반

- 진료요원 소요판단 및 동원배치
- 인원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대책 수립
- 부상자의 진료 및 사망자에 대한 처리
- 기타 재해와 관련된 의료구호 전반에 관한 사항

### ● 위생지도반

-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 재해지역을 정기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수용시설에는 식품위생 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 급식관리

※ 각 반은 관련국의 과장(반장) 1명, 5급 1명, 6급이하 1명으로 구성하되 24시간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각 시·도에서는 자체 재해구호활동반 조직을 편성 운용해야 한다.

현장 구호활동은 대한적십자사 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필요시에는 시·도 보유 재해구호 적립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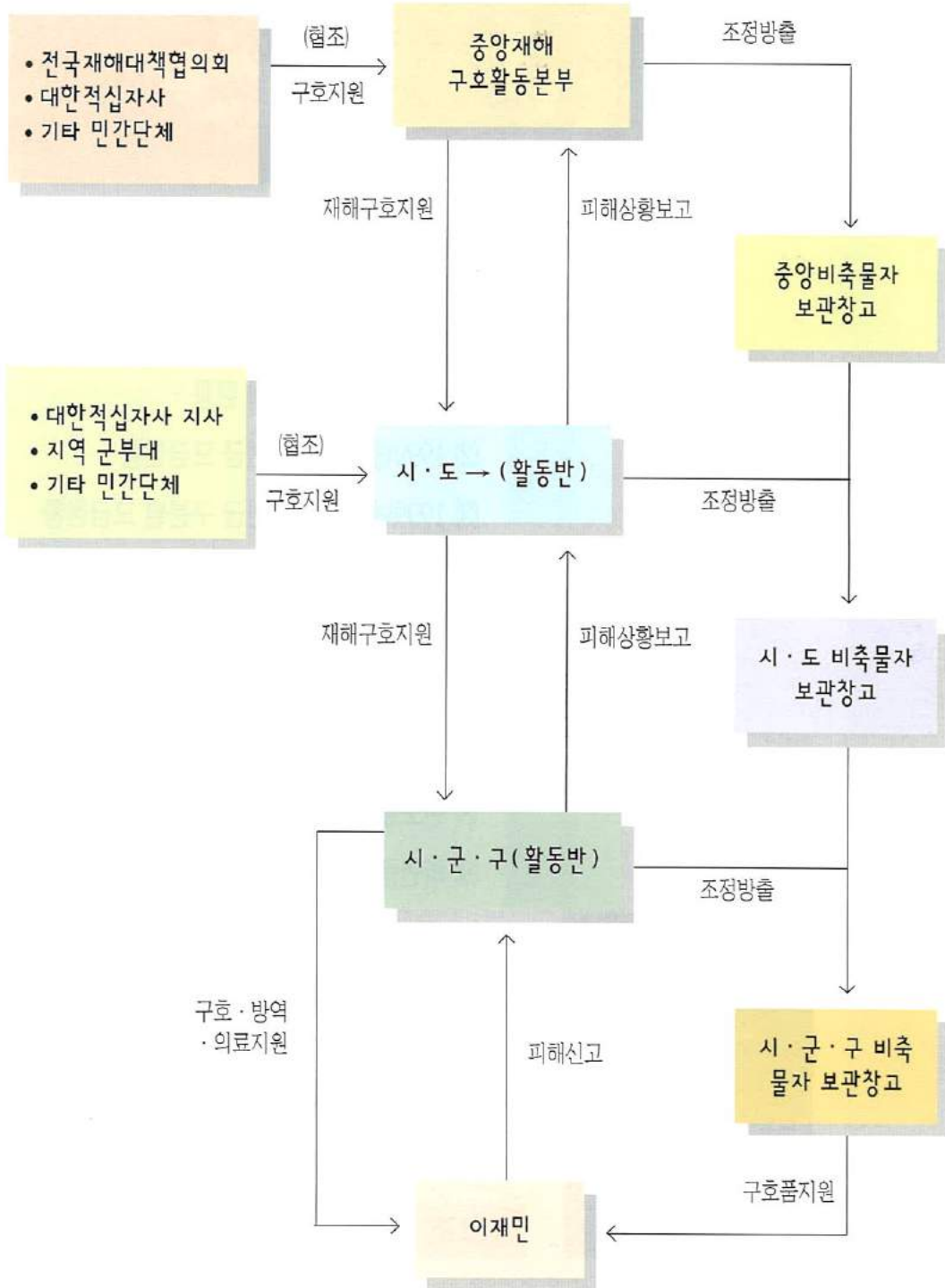
(재해구호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







###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 V. 부 록



## 1. 통계자료

(1) 1999년도 재해피해 현황	67
(2) 1999년도 재해의연금 모금현황	68
(3) 1999년도 재해의연금 구분별 모금현황	69
(4) 1999년도 재해의연금 집행현황	70
(5) 1999년도 재해의연금 시·도별 지원현황	71
(6) 1999년도 의연물품 접수 및 전달현황	72
(7) 최근 5년간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집행현황	73
(8) 연도별 재해모금 및 구호현황	74
(9) 의연품 총 접수내역	75



## 2. 보도 및 홍보자료 76

## 3. 미담 사례 78

## 4. 회원 명단 80





## (1)1999년도 재해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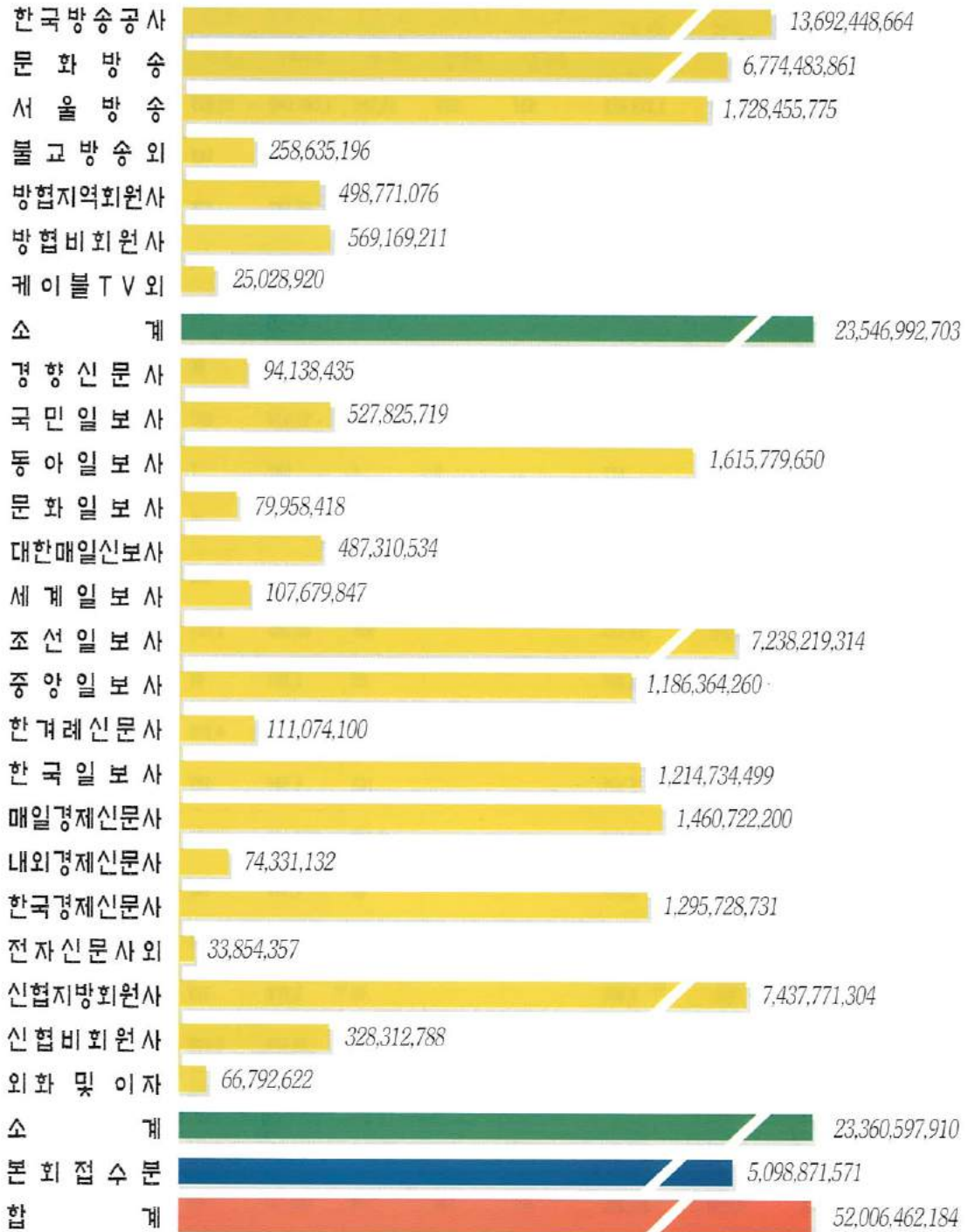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합계	1.7-1.10	2.2-2.3	7.1-7.2	7.23-8.4	9.10	9.17-9.24	10.10-11	12.18-21	
			폭풍설	폭풍설	호우	호우태풍	호우	태풍	호우	폭풍설	
총피해액	백만원	1,219,673	837	294	13,365	1,049,042	50,815	85,348	6,061	13,911	
피 해	이재민	세대	7,415		27	7,033	149	194		12	
		명	26,656		101	25,327	508	648		72	
	사망 및 실종	인	89	9	3	67	2	8			
	침수면적	ha	75,948		12,160	53,159	4,438	6,191			
	주택	전파·반파	동	2,021		20	1,893	28	77	2	1
		피해액	백만원	40,560		296	39,416	287	546	1	14
	선 박	전파·반파	척	611	9	1	582	7	11		1
		피해액	백만원	2,218	96	8	2,030	32	42		10
	농 경 지	유실·매몰	ha	4,677		46	3,879	675	70	7	
		피해액	백만원	24,195		257	20,822	2,674	415	27	
도로 교량	물량	개소	2,407		95	1,881	97	319	15		
	피해액	백만원	147,052		4,053	119,927	9,075	12,740	1,257		
공 하천	물량	개소	5,899		163	4,584	283	787	82		
	피해액	백만원	317,544		5,189	256,106	12,183	40,267	3,799		
공 수리 시설	물량	개소	2,076		20	1,617	185	229	25		
	피해액	백만원	75,484		636	59,658	5,455	9,089	646		
해 설 소규모 시설	물량	개소	3,893		92	3,078	312	399	12		
	피해액	백만원	91,592		792	79,179	4,679	6,804	138		
	기타피해액	백만원	313,748		1,940	286,771	16,124	8,680		233	
	소 계	백만원	945,420		12,610	801,641	47,516	77,580	5,840	233	
기 타 피 해	백만원	207,280	837	198	194	185,133	306	6,765	193	13,654	

# 1. 통계자료

## (2) 1999년도 재해의연금 모금현황

(단위 : 원)







### (3) 1999년도 재해의연금 구분별 모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무원모금	학생모금	기업체모금	일반모금	해외모금	ARS모금	합계
KBS	1,435,911,358	691,752,917	5,942,786,423	2,397,546,460	13,107,645	3,211,343,861	13,692,448,664
MBC	1,814,269,138	406,558,910	405,617,381	2,455,540,952		1,692,497,480	6,774,483,861
SBS	87,711,770	19,822,820	589,553,598	151,630,194		879,737,393	1,728,455,775
기타방송	132,385,619	71,225,490	576,469,533	439,872,384		131,651,377	1,351,604,403
경향신문	14,640,230	1,647,000	66,452,795	11,398,410			94,138,435
국민일보	17,333,070	12,777,930	63,235,230	420,376,949	14,102,540		527,825,719
대한매일	197,441,579	1,390,580	253,116,078	35,362,297			487,310,534
동아일보	62,131,181	154,257,660	954,488,944	415,502,565	29,400,000		1,1615,779,650
문화일보	32,643,120	1,923,300	37,439,998	7,952,000			79,958,418
세계일보	12,480,000	15,982,453	35,375,954	43,841,440			107,679,847
조선일보	433,288,228	649,932,341	3,249,661,707	2,856,640,808	42,207,180	6,489,050	7,238,219,314
중앙일보	45,030,620	188,170,012	598,096,826	281,177,441	73,889,561		1,186,364,260
한겨레신문	17,169,320	11,268,926	42,976,747	39,659,107			111,074,100
한국일보	72,884,070	109,326,105	485,893,799	515,442,525	31,188,000		1,214,734,499
내외경제	2,500,000		68,528,872	3,302,260			74,331,132
매일경제	2,000,000	10,882,721	1,342,593,004	105,246,475			1,460,722,200
한국경제	12,000,000	15,235,630	1,136,872,983	131,620,118			1,295,728,731
지방신문	735,079,211	897,570,405	3,327,200,640	2,096,834,195		46,620	7,866,731,071
분회		116,009,970	3,540,996,392	1,385,585,682	56,279,527		5,098,871,571
계	5,126,898,514	3,375,735,170	22,717,356,204	14,604,532,262	260,174,253	5,921,765,781	52,006,462,184
비율	9.9%	6.5%	43.7%	28.1%	0.5%	11.3%	100%

# 1. 통계자료

## (4) 1999년도 재해의연금 집행현황



합 계 ₩47,609,368,335





### 5) 1999년도 재해의연금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시/도	사망부상자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복구비	생계 보조비	세입자 보조비	생계 지원	특별 위로금	긴급물자 구입비외	계
서울	85,000	144,869					555,256	1,416,180		2,201,305
부산	10,000	1,013	1,200				1,505	98,200		111,918
인천	90,000	250,501					497,098	2,341,880		3,179,479
대구	25,000	6,255					1,665	80,060		112,980
대전	7,500	502					6,218	188,820		205,040
광주	50,000	476		1,350			89,258	120,760		261,844
울산		70						5,540		5,610
경기	182,500	642,480			11,000		3,048,567	14,688,420		18,572,967
강원	47,500	39,348					567,632	1,901,820		2,556,300
충북	2,500	469					70,212	81,060		154,241
충남	17,500	69,300					1,141,278	1,244,060		2,472,138
전북	37,500	28,154					1,111,730	451,720		1,629,104
전남	125,000	206,921	26,400	29,700	15,000	1,500	4,328,515	3,168,400		7,901,436
경북	132,500	9,542		1,350	7,000		154,876	606,780		912,048
경남	40,000	49,020	21,600	5,400			391,050	2,605,940		3,113,010
제주	10,000	608,790	43,800				950	2,924,020		3,587,560
기타									634,388	634,388
계	862,500	2,057,710	93,000	37,800	33,000	1,500	11,965,810	31,923,660	634,388	47,609,368

(6) 1999년도 의약품 접수 및 전달현황

구 분	접수		전달		잔고		비 고 (단가: 원)
	계	환가액(천원)	계	환가액(천원)	계	환가액(천원)	
의 류(점)	565,359	19,787,565	397,310	13,905,850	168,049	5,881,715	35,000
침구류(매)	14,342	430,260	11,499	344,970	2,843	85,290	30,000
버 너(대)	5,450	81,750	5,074	76,110	376	5,640	15,000
생필품(점)	858,906	858,906	595,300	595,300	263,606	263,606	1,000
신발류(족)	31,085	932,550	15,801	474,030	15,284	458,520	30,000
세제류(점)	105,132	105,132	40,675	40,675	64,457	64,457	1,000
의약품(점)	520,285	1,040,570	520,285	1,040,570	0	0	2,000
학용품(점)	44,829	44,829	27,491	27,491	17,338	17,338	1,000
식품류(점)	630,493	630,493	63,493	630,493	0	0	1,000
생수(상자)	54,303	543,030	54,303	543,030	0	0	10,000
라면(상자)	5,750	57,500	5,750	57,500	0	0	10,000
식기류(점)	6,639	19,917	4,188	12,564	2,451	7,353	3,000
양수기(대)	26	2,600	26	2,600	0	0	100,000
건축자재	100,030	2,000,600	100,030	2,000,600	0	0	20,000
백 미(kg)	4,262	5,114	4,262	5,114	0	0	1,200
가 구(점)	238	71,400	238	71,400	0	0	300,000
벽 지(평)	35,603	106,809	35,603	106,809	0	0	3,000
기 타(점)	7,506	75,060	6,452	64,520	1,054	10,540	10,000
계	2,990,238	26,794,085	2,454,780	19,999,626	535,458	6,794,459	
차 량	557		545		12		





(7) 최근 5년간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수					
합 계	27,943,482	49,833,550	20,903,109	88,044,630	77,371,123
전년도 이월금	10,415,542	9,132,478	18,052,263	14,140,989	20,578,817
입					
모금수입	16,421,556	39,475,724	30,900	68,300,018	52,006,462
이자수입	925,188	805,673	819,456	2,245,050	987,933
집행잔액반환금	181,196	419,675	2,000,490	3,358,573	3,019,629
ARS모금 추가분					778,282
지					
합 계	18,811,004	31,781,287	6,762,120	67,465,813	47,609,368
장의위로금	833,000	307,500	290,000	4,135,000	862,500
응급구호비		367	2,747		
장기구호비	1,294,151	869,920	168,728	2,012,783	2,057,710
생계보조비	40,750	330	4,995	26,172	33,000
주택복구비	1,864,800	2,376,000	581,200	6,003,000	37,800
세입주보조비	30,030	225,550	4,500	2,341,900	1,500
침수주택수리	4,981,850	7,417,200	5,709,000	6,988,650	93,000
출					
이재민특별위로금	2,074,100	18,560,320		45,549,100	31,923,660
무상양곡	7,475,462	1,747,711			11,965,810
긴급생필품구입비	200,000			300,000	500,000
기 타	16,861	276,329	950	109,208	134,388
잔 액	9,132,478	18,052,263	14,140,989	20,578,817	29,761,755

(8) 연도별 재해모금 및 구호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모금 및 이자 수입액	구 호 비			합 계
		주택복구비	긴급/장기구호비의외	기 타	
1961	42,741	25,422	11,145	247	36,814
1962	59,597	19,355	17,984	8,403	45,742
1963	62,242	47,338	20,740	10,540	78,618
1964	55,814	35,089	8,596	9,772	53,457
1965	40,459	19,329	15,849	150	35,328
1966	25,653	26,395	4,716		31,111
1967	88,039		12,443	40,967	53,410
1968	227,554	10,000	14,787	210,180	234,967
1969	111,900	48,000	27,582	29,549	105,131
1970	301,956	77,113	180,990	40,254	298,357
1971	161,122	80,790	50,144	18,263	149,197
1972	656,189	373,334	234,028	9,488	616,850
1973	189,685	3,687	25,983	24,401	54,071
1974	514,548	478,038	4,901	1,676	484,615
1975	42,412	6,336		4,855	11,191
1976	487,553	271,557	41,880	247,706	561,143
1977	2,396,900	1,350,575	546,872	122,426	2,019,873
1978	133,532	174,370	63,218	8,098	245,686
1979	4,947,802	1,992,250	176,917	115,710	2,284,877
1980	6,309,343	2,227,180	1,230,308	1,266,222	4,723,710
1981	6,079,381	1,335,988	2,881,824	9,952	4,227,764
1982	1,269,872	353,066	1,616,235	250,579	2,219,880
1983	785,347	319,024	34,274		353,298
1984	17,127,739	957,410	16,253,105	30,806	17,241,321
1985	1,186,653	491,936	1,584,736	201,497	2,278,169
1986	349,213	634,528	2,189,866	200,545	3,024,939
1987	33,074,849	4,735,507	25,522,508	194,412	30,452,427
1988	1,823,642	479,872	1,752,967	102,557	2,335,396
1989	19,116,930	1,988,244	13,270,988	223,814	15,483,046
1990	45,558,203	2,149,809	30,858,882	814,704	33,823,395
1991	28,673,761	1,255,771	16,250,934	134,313	17,641,018
1992	4,369,916	46,400	2,543,811	200,000	2,790,211
1993	7,836,285	607,454	25,561,812	5,306,500	31,475,766
1994	25,602,767	301,960	23,521,045	275	23,823,280
1995	17,527,940	1,894,830	16,699,313	216,861	18,811,004
1996	40,701,072	2,601,550	28,903,408	276,329	31,781,287
1997	2,850,846	585,700	6,175,470	950	6,762,120
1998	73,903,641	8,344,900	58,711,705	409,208	67,465,813
1999	56,792,307	39,300	46,935,680	634,388	47,609,368
합 계	401,485,405	36,389,407	323,957,646	11,376,597	371,723,650





### (9) 의연품 총 접수내역

(1961년 ~ 1999년)

품명	단위	단가	총수량	환가액(천원)
의류	점	35,000원	8,024,433	280,855,155
침구류	매	30,000원	193,088	5,792,640
버너	대	15,000원	29,810	447,150
생필품	점	1,000원	2,760,691	2,760,691
신발류	켤레	30,000원	169,158	5,074,740
세제류	점	1,000원	456,431	456,431
의약품	"	2,000원	2,448,044	4,896,088
학용품	"	1,000원	2,029,296	2,029,296
식품류	"	1,000원	2,243,891	2,243,891
라면	상자	10,000원	83,900	839,000
식기류	점	3,000원	167,294	501,882
백미	kg	1,200원	412,353	494,824
생수	상자	10,000원	69,603	696,030
건축자재	점	20,000원	1,249,945	24,998,900
가구류	조	300,000원	2,387	716,100
벽지	평	3,000원	129,765	389,295
기타	점	10,000원	1,977,889	19,778,890
양수기	대	100,000원	51	5,100
합계			22,448,029	352,976,103

2. 홍보 및 보도자료

조선일보 99년 8월 10일자

해외동포서 장애인-초등생까지...  
수재민돕기 "우리는 하나"

수재의연금 접수창구 표정

"절망에 빠진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 계속된 9일 조선일보 수재의연금 접수창구를 찾은 한국여성마비복지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장애인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 달라'며 성금 17만1000원을 전달했다.

복지회 직원 40여명은 지난주부터 빠듯한 월급에서 5000~1만원 씩의 성금을 모았다. 최명숙(38)씨 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직원 10여명이 앞장섰다. 뇌성마비복지회 김태형(36) 과장은 '일반인에게도

함께 수재가 뇌성마비 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시련이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생들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37) 등 장애인 12·봉

은 어머니와 함께 본사를 찾아와, 몇년간 키워온 돼지저금통 2개를 털어 의연금을 냈다. 김군은 '평소에 받은 동전을 한푼 두푼씩 모은 것'이라며 '좋은 일에 쓰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해외동포들도 따뜻한 동포애를 전해왔다. 홍콩한인회(회장 이성진)는 지난 6일 교민들을 상대로 모금한 457만원을 본사에 보냈다. 홍콩한인상공회도 회원들을 상대로 모은 150만원을 전해왔다.

시민들의 정성도 이날 줄을 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냥 도움이 될까 하고 적은 돈이지만 보낸다'며 한사코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광화문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이호광(37) 사장은 '하루

조선일보 99년 9월 11일자

수재의연금 총 454억 모금

전국재해대책협의회(회장 방상훈·방상환)는 10일 지난 7월 말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 모금에 언론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모두 454억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재해대책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모금한 수재의연금으로 사망·실종자 위로금과 생계보조비로 85억원을, 10일 추석특별위로금으로 190억원을 지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34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9억원은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수재의연금으로 의류, 생필품, 건축자재 등 241만여점(194억원 상당)을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김인상기자 iskim@hosun.com

한국일보 99년 9월 7일자

수재민에 추석 위로금 192억

정부는 7일 추석을 맞아 경기·강원북부 수해지역의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와 이재민에 대해 수재의연금에서 특별위로금 19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은 사망·실종자의 경우 한사람당 1,000만원, 부상자는 500만원, 전파주택은 한동당 300만원, 반파주택은 150만원, 침수주택은 가구당 60만원, 침수 영세상가는 상가당 60만원, 임대주택은 또 월동대책비를 가구당 30만원, 한민 12만~36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한 후 추석추경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특별위로금 예산 8,803억원 중 1,000억원이 예비비로, 7,803억원이 실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월동대책비를 가구당 30만원, 한민 12만~36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조선일보 99년 8월 4일자

그룹 수재의연금 45억

삼성봉사단 5백명 파견  
공경 대우도 10억 눈길  
한화·두산등도 지원내서

수재민을 돕기 위해 기업들도 발벗고 나섰다. 현대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은 39일 SK 5억원, 나머지 그룹 10억원 씩 총 45억을 민간 구호단체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LG는 이날 즉시

성금을 전달했다. 삼성은 또 이날 특수 인명구조반과 의료반, 애프터서비스반, 급식반, 구호반 등으로 구성된 '삼성 수재지역에 5백명을 파견해 복구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도 경기도 동두천시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 생수와 라면, 쌀, 김치 등 1억원 상당의 생필품 2천2백30상자를 전달

했으며 현대건설은 수해지역인 연천군에 모포 1천5백장과 라면 4백상자, 의류 6백여벌을 전달하고 굴착기와 덤프 트럭 등을 동원,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두산은 이날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파주시와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식수 6천상자를 전달했으며 하이트팩주도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의 수재민들에게 먹는 쌀을 '푸리스'를 재해대책협의회를 통해 전달했다. 진로와 보해도 주류 운반차량용 해 식수와 구호물품 공급에 나섰다. 한항공도 1억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김급 지원했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이날 현대백화점은 이날 천군청을 방문해 라면과 만원여치의 식료품을 지원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일 장

동아일보 99년 8월 12일자

언론사 모금 수재의연금  
1차분 83억원 긴급배정

보건복지부는 11일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각 언론사 등을 통해 모금한 수재의연금 230여억원 중 1차로 83억원을 이재민구호비 주택침수 수리비 주택파손 지원비 등으로 긴급배

정했다. 수재의연금 1차분의 시도별 지원내용은 경기도가 49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1억9100만원 △경남 8억3400억원 △강원 7억4900만원 △전북 2억7900만원 △경북 1억9500만원 △충북 5200만원 순이었다(정성화기자)





조선일보 99년 8월 30일자



### 수해의연금 IMF때보다 줄고 농장지원...주민고통 더 심해

작년보다 적게 걸친 수해의연금에 수재민 위로금의 농장 지원, 마구잡이로 배분된 구호 물품들...

신문-방송 등 전국 각 언론사에 기탁된 의연금과 구호물품을 접수해 복지부를 통해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29일까지 접수된 것은 성금 420억원에 물품 282만3800여점. IMF로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던 작년의 의연금 683억원에 구호물품 380만점이 걸렸었다.

신문-방송 등 전국 각 언론사에 기탁된 의연금과 구호물품을 접수해 복지부를 통해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29일까지 접수된 것은 성금 420억원에 물품 282만3800여점. IMF로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던 작년의 의연금 683억원에 구호물품 380만점이 걸렸었다.

수해의연금이 작년의 70%도 채 안돼요. 국민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그만큼 약해진 것이지...」 안병화(안병화·49) 재해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경제가 좁아졌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성금이 준 것은 뜻밖」이라며 「특히 개인들이 내는 성금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

동두천시 송정란(39·중앙동)씨는 「아기가 없는데도 분유 2통이 집집마다 똑같이 지급됐다」며 「필요한 물품을 가려서 주어야 기탁한 사람들의 뜻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부만 산다는 한장근(51·상암·중앙동)씨는 「옷을 20여벌이나 동명이로 받았는데 어린이 옷과 양말이 여러벌 섞여 있었다」며 「타은 옷들이 대부분 사이즈가 안맞아다」고 쏟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수해의연금 454억원 모금

원을 지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34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9억원 은 추후 재해에 대비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수해의연금으로 의류와 생활필품, 건축자재 등 241만 여점 (194억원 상당)을 경기도 등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각 사별로 접수된 재해의연금은 방송사에서 한국방송공사(KBS)가 103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이어 문화방송(MBC) 48억원, 서울방송(SBS) 8억원 등이었다. 또 신문사에서 조선일보 69억, 매일경제 14억, 동아일보 13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문-방송 등 전국 각 언론사에 기탁된 의연금과 구호물품을 접수해 복지부를 통해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29일까지 접수된 것은 성금 420억원에 물품 282만3800여점. IMF로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던 작년의 의연금 683억원에 구호물품 380만점이 걸렸었다.

애인신문 99년 8월 16일자

### 재해의연금 83억 긴급 지원

#### 경기·강원등 피해심한곳 우선배정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83억원의 재해의연금이 긴급 배정됐다.

경기와 강원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된 재해의연금은 이재민 구호와 주택침수 수리, 주택과 손지원비에 사용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재해의연금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 배정했다. 이에

국민일보 99년 8월 14일자

### 수재의연금 83억원 집행

보건복지부는 11일 전국 언론기관에서 모은 수재의연금 2백36억원 중 정부의 생색내기에 쓰려졌다. 시·도별로는 경기 49억8천3천400여만원, 강원 11억9천1백만원, 전남 8억3천4백만원, 경북 7억4천9백만원, 전북 2억7천9백만원, 경남 1억9천5백만원, 충북 5천2백만원 등이다.

대한매일 99년 8월 21일자

### “수재의연금 이재민구호에만 사용”

행정자치부는 20일 수재의연금 일부가 수재민 지원이 아닌 재해복구비로 사용됐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내년부터 수재의연금은 이재민 구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수재의연금 일부가 수재민 지원이 아닌 재해복구비로 사용됐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내년부터 수재의연금은 이재민 구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수재의연금 일부가 수재민 지원이 아닌 재해복구비로 사용됐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내년부터 수재의연금은 이재민 구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수재의연금 일부가 수재민 지원이 아닌 재해복구비로 사용됐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내년부터 수재의연금은 이재민 구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 미담 사례

(1) 사랑의 보일러

『사랑의 보일러 교실』 이영수(서울시 성동구 송정동)님은 매년 수해의 현장을 찾아 어려운 이웃의 보일러를 무료로 고쳐주고 있다. 99년에도 파주 문산읍 등지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40여 가구의 보일러를 자비를 들여 무료로 수리해 주었다. 이들은 이런 선행을 하면서도 수재민에게 조금의 불편도 주지 않으려고 천막을 직접 챙겨가고, 화비를 모아서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이재민들을 돌보아주어 주위의 신망을 얻고 있다. 이영수님은 항상 「서로 조금씩 힘을 합치면 보다 많은 이웃을 도울수 있어요. 자원봉사는 베푸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며 항상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2) 수재민 돕기에는 재소자도 한마음

수해로 인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는 모든 동포가 한마음이 되었다. 경남 마산의 마산교도소 재소자 중 315명이 수재의연금 350여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772명이 620여만원, 군산교도소 368명이 370여만원, 대구교도소 472명이 400여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들은 몸은 비록 영어의 상태이지만 수해로 인해 이재민이 재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작업 상여금과 영치금 등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 수해 현장의 꽃 자원봉사자

수마가 활취고 간 수해의 현장에는 수천명의 자원봉사자가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의 손길을 바쁘게 놀리며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 중 김보미(대원외고 1), 이유진(해원외고 1)양은 96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바짐없이 수해현장을 찾아 다니며 이재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물 퍼내기, 청소, 빨래 등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웬만한 봉사자 두사람 몫의 일을 해내고 있으며, 또래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작업요령을 가르쳐 줄 정도로 베테랑이 되었다. 이들은 우리의 노력이 이재민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절로 기뻐진다며 하루의 고된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의 자원봉사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 태풍이란?

태풍은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지구상에 연평균 80개 정도가 발생하며 미주쪽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으로 인도양쪽은 사이클론(Cyclone), 호주쪽에서는 윌리윌리로 불린다.

### 태풍의 이름

태풍은 편의상 발생순서에 따라 번호와 이름을 붙인다. 번호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기상청에서 제1호부터 지정해 시작하며 이름은 괄에 위치한 미 태풍합동경보센터에서 이름을 붙인다.

2000년부터는 태풍의 이름을 아시아 각 나라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서양식의 태풍이름에서 아시아(14개국)의 고유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신문에서 순우리말(아래표 참조)이 태풍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태풍의 이름이다.

국가명	1조	2조	3조	4조	5조
캄보디아	돔 레 이	콩 레 이	나 크 리	크 로 반	사 리 카
중국	룽 방	위 투	평 셴	두 지 앤	하 이 마
북한	기 러 기	도 라 지	갈 매 기	매 미	메 아 리
홍콩	카 이 탁	마 니	풍 횡	초 이 완	망 온
일본	덴 빈	우 사 기	간 무 리	긱 푸	도 카 게
라오스	볼 라 벤	파 북	판 폰	케 사 나	늑 텐
마카오	잔 쯔	우 딕	봉 풍	파 마	무 이 파
말레이시아	절 라 왓	서 팻	루 사	멀 로	머 르 북
미크로네시아	이 위 나	피 토	신 라 쿠	니 파 탁	난 마 돌
필리핀	빌 리 스	다 나 스	하 구 핏	루 핏	탈 라 스
한국	개 미	나 리	장 미	수 달	노 루
태국	프 라 피 룬	비 파	멕 클 라	니 다	쿨 라 브
미국	마 리 아	프란시스스코	히 고 스	오 마 이스	로 키
베트남	오 마 이스	로 키			

※태풍의 이름은 위와 같이 5개조로 구성되며 1조부터 5조까지 순환하며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4. 회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기관	전 화
고 문	류 달 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02)786-1754
"	황 온 순	휘경학원 이사장	02)244-2304
회 장	최 학 래	한겨레신문사 사장	02)710-0100
부 회 장	하 영 석	대전문화방송 사장	042)222-3000
상임이사	한 중 광	한국방송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02)3219-5560
이 사	금 창 태	중앙일보사 사장	02)751-9841
"	김 각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02)3771-0114
"	문 태 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02)712-0305
"	박 권 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02)781-2311
"	박 기 룬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02)3705-3705
"	은 방 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02)746-4995
"	이 응	한국신문협회 사무국장	02)733-2251
"	장 재 국	한국일보사 회장	02)724-2114
"	최 문 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국장	02)732-1726
감 사	채 수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02)576-5892
"	장 대 환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02)2000-2550
회 원	강 대 진	전국극장연합회 회장	02)735-3382





직 위	성 명	소속기관	전 화
회 원	김 숙 희	대한YWCA연합회 회장	02)774-9702
"	김 재 정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02)676-9751
"	김 재 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02)551-0114
"	김 진 현	문화일보사 사장	02)3701-5114
"	노 성 대	(주)문화방송 사장	02)784-2000
"	박 상 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02)785-0010
"	박 용 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02)316-3502
"	박 중 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02)2240-3114
"	송 도 균	(주)SBS사장	02)780-0006
"	송 병 준	세계일보사 사장	02)2000-1234
"	오 명	동아일보사 사장	02)2020-0114
"	오 시 덕	대한주택공사 사장	0342)738-3114
"	이 남 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02)754-7891
"	이 시 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장	02)2634-5152
"	이 윤 중	입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02)416-9416
"	이 중 대	국민일보사 사장	02)781-9114
"	정 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원장	02)739-5590
"	정 대 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02)397-5114
"	차 일 석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02)2000-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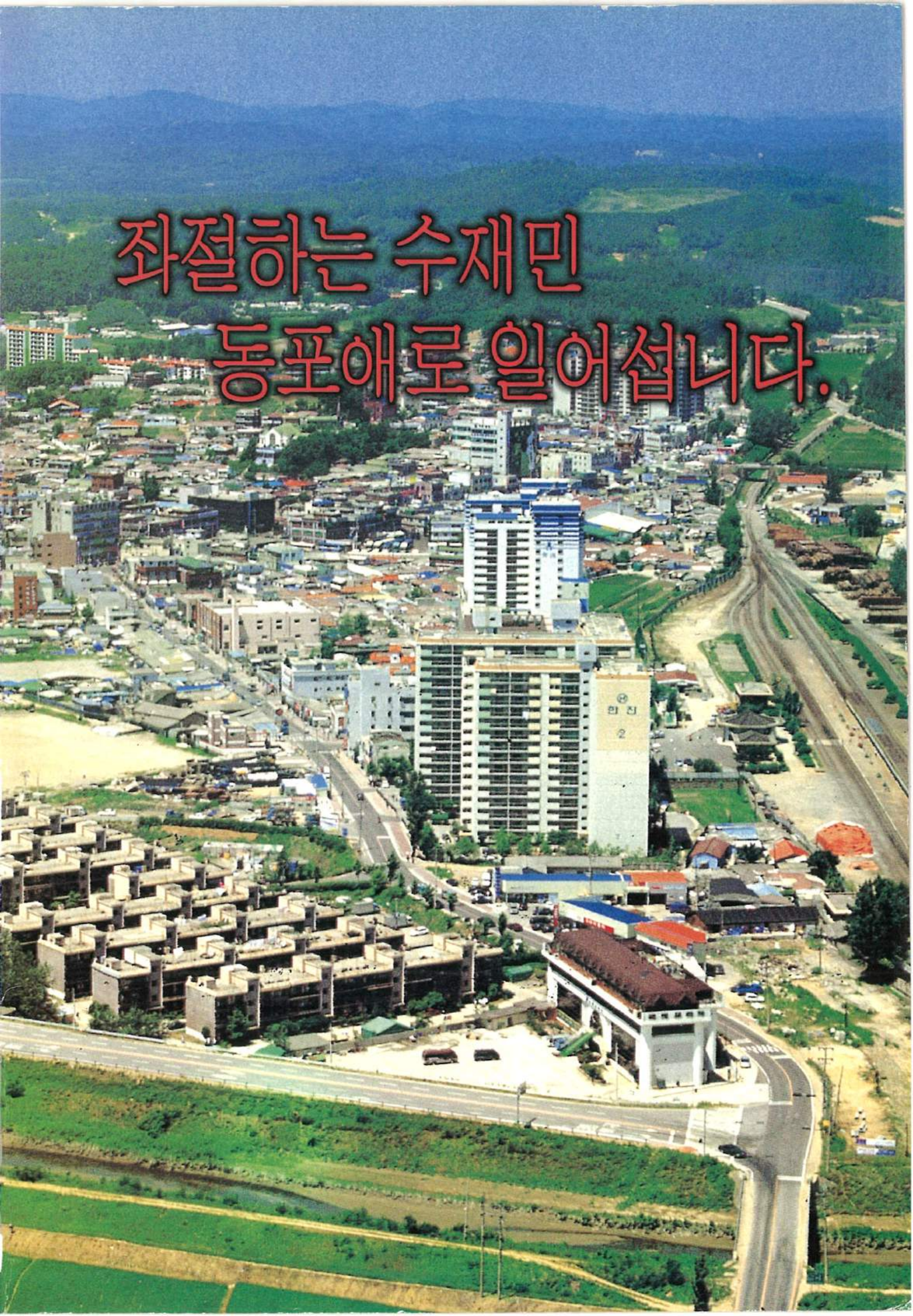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대규모 재해발생시  
국민의 정성어린 재해의연금품을 모집,  
재해이재민에게 지원하여 이재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이재민구호에  
전력하겠습니다.



좌절하는 수재민  
동포애로 일어섭니다.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2000 연보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TEL. (02) 3272-0123(대) / FAX. (02) 3272-0122

<http://www.relief.or.kr>